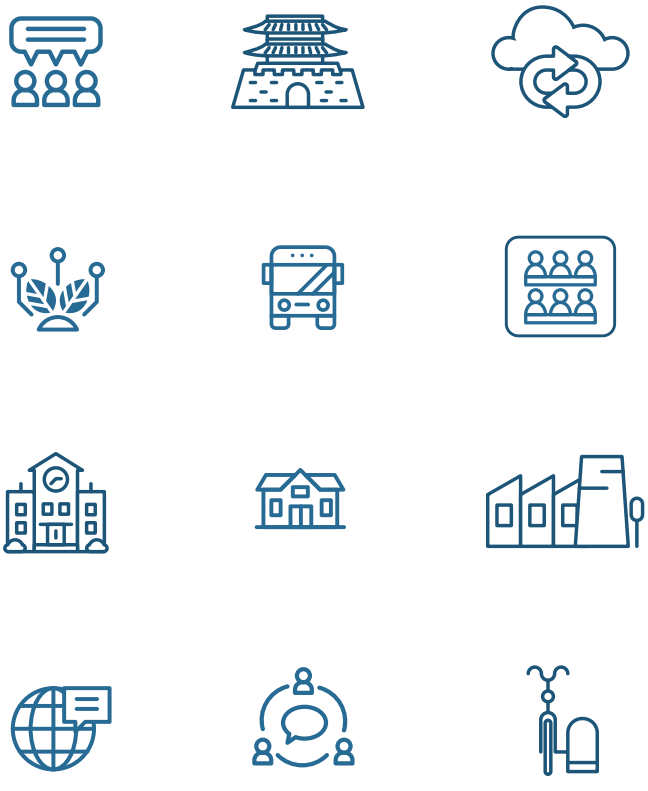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5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주요 공약

1. 더불어민주당(이재명 후보) ····· 1
2. 국민의힘(김문수 후보) ····· 7
3. 개혁신당(이준석 후보) ····· 12
4. 민주노동당(권영국 후보) ····· 15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1
2.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관계부처 합동) ····· 35
3. 경제규제 개선 과제(관계부처 합동) ····· 43
4.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소방청) ····· 51
5. 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행정안전부) ····· 60
6.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 65

Ⅲ.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키오스크 접근성 해소를 위한 지자체 사례(서울특별시 외) ····· 75
2. 재직청년 복지포인트(인천광역시) ····· 84
3.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정책 '제주의 선물'(제주특별자치도) ····· 88

목 차

Ⅳ.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97

2. 전통주 산업의 정책동향과 발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103

3. 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110

4.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114

5.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한국교육개발원〕 ···· 121

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행 방안 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29

2.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 활용 개선방안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34

3.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 유보통합 재원마련 계획 미비 〔교육위원회〕 ····· 140

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주요 공약

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주요 공약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10대 공약 ※ 이행방법별 세부목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1. 경제・산업

-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목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이행방법**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 실현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2. 정치・사법

-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목표:** 내란극복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 **이행방법**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검찰 개혁 완성 / 사법개혁 완수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Ⅰ. 제21대 대선 후보자 주요 공약

3. 경제・산업

• 공약: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 목표: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 이행방법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4. 외교・통상

• 공약: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목표:**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이행방법**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5. 사법・행정・보건의료

• 공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목표:**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

• **이행방법**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Ⅰ. 제21대 대선 후보자 주요 공약

6. 행정・경제・산업

• 공약: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목표: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3대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7. 교육・경제・복지

• 공약: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목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7. 교육・경제・복지 (계속)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8. 경제・복지

• 공약: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목표:**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이행방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9. 교육・복지

• 공약: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목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10. 환경・산업

• 공약: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 이행방법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 10대 공약 ※ 이행방법별 세부목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지원・건설교통

・공약: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목표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이행방법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투자 저해 규제 혁신, 기업투자 활성화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주52시간제 개선 등)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목표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이행방법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3. 재정 • 경제 • 복지 • 교육 • 인적자원 • 산업자원 • 건설교통

• 공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목표

-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이행방법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3 • 3 • 3 청년주택 공급 등)
-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청년 도약 지원 / 군가산점제 도입

4. 재정 • 경제 • 복지 • 산업자원 • 건설교통

• 공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목표

-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이행방법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5. 재정 • 경제 • 복지 • 산업자원 • 건설교통

• 공약: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목표: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 이행방법

- 중산층 감세 추진 /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 생활물가 부담 완화 / 부동산 제도 개편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목표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이행방법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 디딤돌 소득 도입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7. 재정・경제・복지

・공약: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목표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이행방법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8. 정치 • 행정 • 사법 • 보건의료 • 환경

• 공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목표

- 복합 •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 국가 항공 건설 • 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
-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

9. 정치 • 행정 • 사법 • 국방 • 통일 • 외교통상

•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목표

- 정치 • 사법 • 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 이행방법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 임명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 공수처 폐지
- 사법 방해죄 신설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10. 국방・통일・외교통상

• 공약: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 이행방법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10대 공약 ※ 이행방법별 세부목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1. 행정

• 공약: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목표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 이행방법

-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3부총리제 도입
-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정부기구 효율화

2. 산업자원

• 공약: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목표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 이행방법

-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3. 조세 지방자치

• 공약: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이행방법

-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4. 경제 지방자치

• 공약: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목표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적용 기준 명확화

5. 사회복지

• 공약: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목표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 이행방법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6. 교육

• 공약: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목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이행방법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 경제

• 공약: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목표

-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 이행방법

-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8. 국방

• 공약: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 목표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 이행방법

-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복무 유예제 도입

9. 산업자원규제혁파

• 공약: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목표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 이행방법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 공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목표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이행방법

-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 10대 공약 ※ 이행방법별 세부목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1. 재정 • 경제 • 복지

• 공약: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목표: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상속 • 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세율 90%로 상향
-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 소득세 •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하여 사회복지목적세와 기후정의세의 세수 확보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세금 부과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 그 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원상복구

2. 기타(노동) • 재정 • 경제 • 복지

• 공약: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 목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 노란봉투법 통과(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초기업 단위 지역 • 산별교섭 제도화
-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3. 재정 • 경제 • 복지

• 공약: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 목표

- 경제적 성장보다 경제적 번영, 다 같이 잘사는 공생 사회 건설
- 3대 축 : 분배를 통한 경제번영, 경제 구조 사회화, 일자리 국가 책임

• 이행방법

- 자영업 부채탕감 /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역사회 중소기업 •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 농업대전환

4. 교육 • 인적자원 • 기타(사회안전)

• 공약: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목표: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 • 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 학생 인권과 노동권 보호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 구축
-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5. 보건의료 • 환경

• 공약: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 목표

-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

• 이행방법

-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로 기후위기 속, 모두의 존엄한 삶 보호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로 상향
-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생태보호지역의 확대
- AI 및 디지털전환, 반도체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 자동차, 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
-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
- 기후위기 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 마련

6. 산업자원 • 건설교통 • 재정 • 경제 • 복지

• 공약: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목표: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이행방법

- 주거기준 현실화로 주거권 확대
-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토지와 주택 공공 선매권 도입
- 주택 소유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 / 공공 재건축 지원

7. 정치 • 행정 • 사법

• 공약: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목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이행방법

- 내란과 국헌문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
- 시민주권 강화 / 정치의 다양성 확대 /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

8. 보건의료 • 환경 • 재정 • 경제 • 복지

• 공약: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 전환
-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이행방법

-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의 혁신적 강화
- 모두가 행복한 출산 • 보육 시스템 확립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 초고령화 사회, 모두를 위한 노인 존중 사회 /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9. 교육 • 문화 • 인적자원 • 스포츠

• 공약: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목표

-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 • 맞춤 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교실 대전환 (소규모 학교체제 전환, 책임교육 실현, 학내 민주주의 실현)
- 대학교육 대전환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등)
- 입시경쟁 완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일본식 '부카츠' 모델 도입 등)
- 노동교육 강화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10. 국방 • 통일 • 외교통상

• 공약: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 목표

-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복원 및 외교 다각화
- 한반도 안정화로 평화 안보와 경제적 번영 달성

• 이행방법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데탕트' 추진
- 지뢰밭을 철길로,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실현
-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 '친미 vs 친중' 수렁에 빠진 이념 외교 탈피,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인권강군으로 신뢰받는 군대, 더 든든한 국방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제도 개선, ②생산 역량 강화, ③국내판로 확대, ④해외시장 개척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됨('25.2.12.)

1 추진배경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0년, 이하 전통주법) 이후 정부는 전통주 산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혼술(Solo-酒)·홈술(Home-酒) 문화, MZ세대 중심의 새로운 소비트렌드 확산** 등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전통주 시장규모(억원): ('10년)433 → ('20)627 → ('21)941 → ('22)1,629 → ('23년)1,475

○ 그러나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 생산 인프라, 판로 및 수출 지원 등은 여전히 미흡하며,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2 추진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주세법」, 「조달청 예산지침」,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근거하여 추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외교, 관광, 유통 등 다분야 연계 정책 마련

3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1.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고 강소업체로 육성**

- (소규모) 증류주 창업 활성화 위해 **소규모 면허 확대**('25, 주류면허령 개정)

  * (現)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 → (改) 소주, 브랜디, 위스키 추가(8개 주종 허용)

- (주세) 업계 성장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 강화**('25, 주세령 개정)

  * (요건) (現) 발효(증류)주류 전년 생산량 500(250)㎘ 이하 → **(改) 1,000(500)㎘ 이하**
  (감면) (現) 발효(증류)주류 금년 생산량 200(100)㎘ 이하분은 주세 50% 경감 →
  (改) 200~400(100~200)㎘ 30% 경감구간 추가 신설

○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

- (전통주)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민속주) **규제 완화**('25년, 전통주법 개정)

  * (現) 주원료(상위 3개 원료) 지역농산물 100% 사용 → **(改) 지역농산물 예시95%이상 사용**

- (대표주종)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 제조방식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 추진('25)

2. 전문성 제고와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

○ **하드웨어**(기술적)·**소프트웨어**(인적) **측면의 전문성 제고**

- (연구개발) 제품 품질향상 및 관리를 위한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25~)

  * 원료별 양조적성평가('25, 15종), 양조용 미생물 국산화(150주), 품질 DB 구축('26,350개) 등

- (창업지원) 실무 지식 습득 및 업계 조기정착을 위해 (예비)창업 대상 **현장 방문·진단**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15개소) 지원('25)

○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 (전용자금) 전통주 전용펀드(101억원) 및 농식품일반펀드(40억↑)를 활용하여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 지원**('25)

- (교육기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3개소 내외) **지정**('25)

3.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민·관 수요 창출 확대

○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지역 명물로 육성**

- (문화행사) **국내관광 박람회,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 추진**('25, 문체부·지자체·협회 등 협업)

- (관광자원) 지역 미식자원 연계한 **전통주 미식벨트**(1개) 개발·발굴('25), 지역 양조장의 관광자원화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26)

○ **민·관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접촉기회 강화**

- (민간) 우리술 품평회(18점) 등으로 **우수 제품 발굴**하고, 판로개척 위해 **대축제**(11월), **바이어 상담회,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수시 개최('25)

- (공공) 공공기관의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25, 기재부·조달청 협업)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 예외**로 인정,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 등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입점 지원강화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 협업 강화**

- (재외공관) 주요 행사(3개 공관)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전통주 홍보 **기획·자문, 전문인력 및 시음주** 등을 **지원**('25)
- (외교관) **정규 교육과정**에 **전통주** 및 **한식페어링 교육 추가**('25, 외교부)

* (신규자) 전통주 갤러리, 한식문화공간 이음 등 전통주·한식 체험형 현장학습 (공관장·재외공관 발령자) 전통주 및 한식 페어링 과목 도입해 전문성 제고

○ **전통주의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

- (공항)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판매를 위해 가점부여,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입점 우대**('25, 중기부)

*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설치·운영('24년 3개소 → '25년 6개소)

- (협의회) 전통주 수출업체(75개 社) 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 예산(최대 300백만원) 지원('25)
- (홍보) K-Food 동반 수출을 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 제작·배포('25)

* 한식 페어링 등 정보를 포함해 영문 등 4개 국어로 재외공관 등에 배포

※ 건배주 가이드북 예시

▸ 지역별·테마별 전통주(세계 주류품평회 수상작 등) 리스트를 어울리는 한식 등 페어링 정보와 함께 수록

▸ 현지의 주류 트렌드를 반영한 국가별 맞춤형 추천 가이드북 기획, 건배주의 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 바이어 알선 등 추진



4 기대효과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및 주세 혜택 강화 등 신규 창업 지원과 전통주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공항 면세점 입점 확대, 수출협의회 운영 등 **창업·판로·수출 지원강화**를 통한 **고품질 명주(名酒)산업 육성**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식품산업과]

○ 2023년 기준 **전국 전통주 출고액**은 **약 1,475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 출고액(약 10조 원)의 **1.47%**를 차지함. 전통주로 분류 가능한 주종(탁주, 청주, 약주, 증류식소주 등)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에 달하며, 전체의 약 13.4%에 해당함 [참고2]

○ **전북자치도**는 2022년 기준 전통주 출고액 약 25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전통주 출고금액의 약 15.8%를 차지하여 전국 2위를 차지함(강원도 약 346억원, 전국 출고량의 약 21.2%). **2023년**에는 **출고액이 262억원**으로 전국(1,475억원)의 **17.8%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전통주 산업 활성화로 어려운 농촌 경제에 농산물 소비,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23~'27년)'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K-전통주, 명주(名酒)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사업을 확대함

○ **전북자치도** 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25년 올해의 건배주**로 김제 '대비모주', 완주 '숨은골약주', 무주 '머루와인', 익산 '리28' 를 선정하여[1] 도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 및 마케팅과 해당제품 판로 확대 및 유통채널 진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4년 전북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지원(총 사업비 65백만원): 식품명인(총 11개소) 중 주류 3개소(송화백일주, 전주이강주, 죽력고) 발효식품엑스포 홍보판촉 및 마케팅 지원 등

○ 다만, 타 지자체에서 전통주 관련 행사 및 홍보·시설 투자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해, 전북도는 '식품명인' 중심으로 마케팅과 홍보가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인 전통주 산업 육성 및 홍보가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북도의 전통주를 대표할 만한 관련 행사(축제)가 없는 점**이 다소 아쉬우며('24년 제1회 전주시 막걸리축제 개최), 축제 등 **전통주 행사개최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1>

1) 전북 전통주의 품격을 알린다 '2025년 올해의 건배주' 선정 (전북자치도 보도자료, '25.3.17.)

○ **전통주 산업**은 **농업과 지역경제, 문화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와 같은 전통주 강세 지역에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정부의 전통주 육성계획에 맞춰서 더욱 활발하게 전통주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1]

○ 전북도가 전통주 사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확대, 지역특산물 기반 브랜드 강화, 마케팅 전략 강화, K-푸드와 연계한 전통주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을 병행해야하며,

○ 전북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 실효성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양조 생태계 조성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주세(지역특산주 등)의 지방세 이양 건의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개정 2023. 12. 8.>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표1> 광역 지자체 전통주 관련 행사(축제) 현황

시・도	행사(축제)명	사업대상	추진시기 ('24년 기준)	주요내용
서울	서울 국제 주류&와인 박람회	일반주류 및 전통주	'24.04.	세계 각국 주류 판매・체험, 각종 문화공연 등
부산	「부산국제주류박람회」 / 별바다 부산나이트마켓	일반주류 및 전통주	'24.08. '24.09.	주류문페스티벌 운영 등 /전통주체험 및 먹거리부스 등
대구	불로불로 막걸리축제	전통주	'24.11.	대구 내 양조장 연계 개최, 시음 및 판매 등
인천	송도 맥주축제	일반주류	'24.08.	세계 맥주 체험 및 푸드부스 운영, 대형 공연 진행 등
광주	광주 주류관광페스타	일반주류 및 전통주	'24.10.	외국인대상 전통주 시음회・체험 지역내 양조장 연계 행사 등
대전	「대전 국제와인엑스포」 중 '우리술한마당' 세션 운영	일반주류 및 전통주	'24.10.	국내 와인 및 전통주 소개, 대전 지역 전통주 홍보부스 운영
울산	태화시장 막걸리축제	전통주	'24.11.	막걸리 시음・체험, 축하공연, 먹거리 판매 등
세종	지역 전통주 시음행사	전통주	'24.03.	지역 양조장・대형호텔(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와 함께한 전통주 시음행사
경기	「경기주류대상」	전통주	'24.08.	경기지역 전통주 품평회, 140여개 체험부스 운영 등
강원	전통주조 예술 팜파티	전통주	'24.09.	전통주 생산체험・시음, 지역관광탐방, 예술공연 등
충북	대한민국 막걸리& 못난이 김치 축제	전통주	'24.10.	전통주 체험, 문화공연, 지역특산품 못난이김치 연계 등
충남	명주 페스타 ('대한민국 명주대상' 공동 개최)	전통주	'24.10.	전국 30여 개 양조장의 약 100여개 전통주 소개・판매
전북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내 '전통주 부스' 운영 /전주 막걸리축제(1회)	일반주류 및 전통주	'24.10..	전통주, 수제맥주 등 부스 운영 /전주 내 막걸리 판매・문화행사
전남	「남도 주류페스타」	전통주	'24.11.	남도술 시음, 미식푸드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	「경북 전통주 문화 대축전」	전통주	'24.03.	경북 대표 전통주 판매・전시, 홍보전시관 운영 등
	*안동소주 '공동주병' 론칭	전통주	'25.03.	*지자체 최초 '안동소주' 단일 브랜드화, 독립홍보관 운영, '공동주병' 개발로 글로벌 론칭
경남	「경남 전통주 대회」	전통주	'24.04.	창원 ㈜전통주이야기 주관 청주・탁주 시음, 문화공연 등
제주	「제주 푸드&와인 페스티벌」 / 제주한잔 우리술 페스티벌	일반주류 / 전통주	'24.05. / '24.07.	제주 외식업체 및 와인과 함께하는 미식 축제 등 / 제주 지역 전통주 소개, 시음 체험행사, 먹거리 부스운영 등

*일반적으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의미함. 전통주 등(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증류주, 리큐르 등 포함), 일반주류(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해당

<출처 : 각 시도 홈페이지·보도자료>

참고 1 전통주 산업 활성화 비전 및 전략 · 추진일정 (정부합동, '25.2.)

비전

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

목표

-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
  - (부가가치 확대) 전통주류 매출액(출고액) : ('23) 1.3 → ('27) 2조원
  - (해외시장 확대) 전통주류 해외시장(수출액) : ('23) 24 → ('27) 50백만불
  - (쌀소비량 확대) 전통주류 쌀 소비량 : ('22) 1.9 → ('27) 2.7만톤

중점 추진 전략

[1. 제도] 명주 육성 기반 조성	▷ **신규진입 지원 및 강소 업체 육성** • 소규모 면허 범위 확대, 주세 경감 혜택 강화 ▷ **다양한 농산물 활용해 산업 저변확대** • 전통주 규제 완화, 소주 주종 세분화
[2. 생산] 업계 역량 강화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 •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 전통주 전용자금 운용, 교육기관의 질적 개선
[3. 내수] 국내 판로 확대 지원	▷ **전통주를 지역 관광콘텐츠로 육성** • 지역 문화행사 연계 홍보, 전통주 미식벨트 신설 ▷ **민·관의 전통주 수요 창출** •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공공기관 구매 여건 개선
[4.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관계부처 협업 강화** • 재외공관 연계 홍보, 외교관 대상 전통주 교육 ▷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지원** •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 수출협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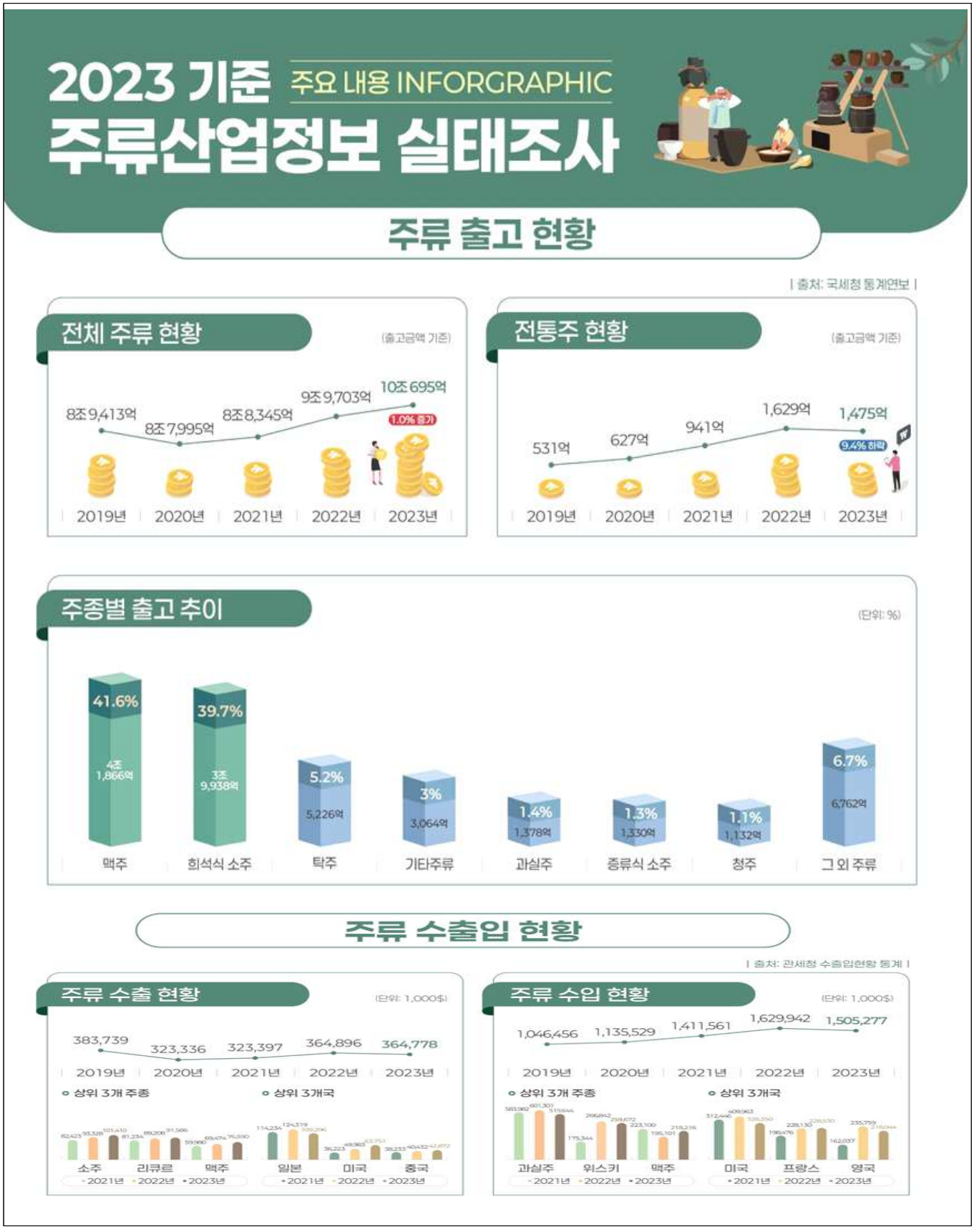
추진 기반

-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도 정착 및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추진 과제		일정	소관부처
1. [제도] 명주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1 신규진입 지원 및 강소 업체 육성			
○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범위 확대	'25.上	기재부·국세청
○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	'25.上	기재부·국세청
2 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			
○	전통주 원료조달 규제 완화	'25.下	농식품부
○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검토	'25.下	농식품부·기재부
○	주류의 주요 정보 표시기준제 도입 검토	'26.~	농식품부·식약처
2. [생산] 업계 역량 강화			
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			
○	명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강화	'25.下	농식품부·농진청
○	양조장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25.下	농식품부
2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	전통주 전용자금 운용	'25.下	농식품부
○	전통주 교육기관 운영 강화	'25.上	농식품부
3. [내수] 국내 판로 확대 지원			
1 전통주를 지역 관광콘텐츠로 육성			
○	지역 문화행사 연계 홍보	'25.下	농식품부·문체부 등
○	전통주 미식벨트 신설 및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내실화	'26.下	농식품부
2 민·관의 전통주 수요 창출			
○	전통주 발굴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25.下	농식품부
○	공공기관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	'25.下	농식품부·기재부·조달청
4.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관계부처 협업 강화			
○	재외공관 연계 전통주 홍보	'25.下	농식품부·외교부
○	외교관 대상 전통주 교육 신설	'25.下	농식품부·외교부
2 전통주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			
○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전통주 특별매대 설치	'25.下	중기부
○	수출협의회 운영 및 공동마케팅 지원	'25.下	농식품부
[정책 추진기반]			
1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통주법상 구체적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25.下	농식품부, 국세청
2 제도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협의체, 정보포털(더술닷컴 누리집)등 활용 정책 홍보	계속	농식품부

참고 2 주류(전통주 등) 산업 현황 ('23년 기준)



◇ 국내 주류산업 현황

1. 전체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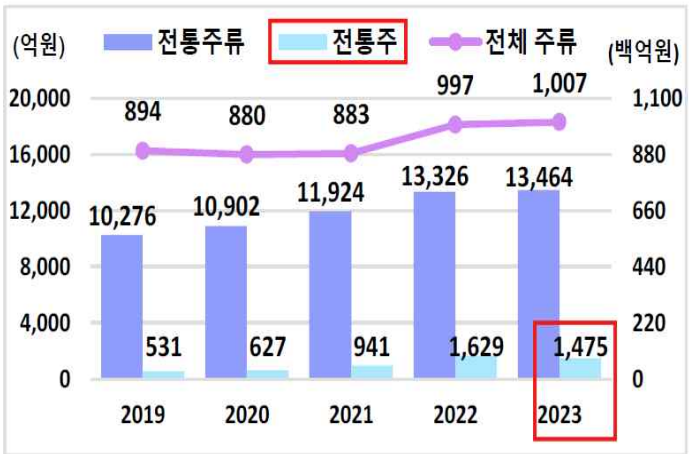
- **국내 주류 시장 총 출고액**은 약 10조 원으로, 2023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주요 주종별 출고액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순

구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출고액	89,412	87,995	88,345	99,703	**100,695**
전통주 등 출고액	10,276	10,902	11,924	13,326	**13,464**
전통주 출고액	531	627	941	1,629	**1,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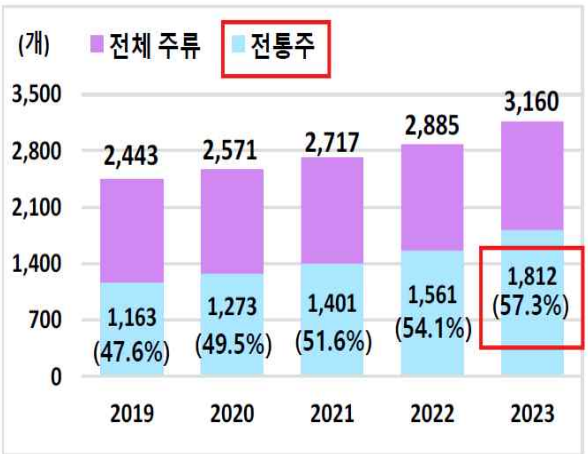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2. 전통주 산업 규모

- 법적 **전통주**(민속주 + 지역특산주)의 출고액은 **1,475억 원**으로, 전체 주류 출고액의 약 1.47%에 해당함
- 전통주로 분류 가능한 8개 주종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전체의 13.4%)
- **전통주 제조면허 수**는 1,812개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3,160개) 중 **57.3%**를 차지, 이 중 **97.5%**는 **지역특산주 중심**



<연도별 주류 매출액>



<연도별 주류 제조면허 수>

☞ 전통주 혜택(주세 감면, 온라인 판매 등)이 있어, 민속주 比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제조면허 수 증가하고 있음(1,766개, 97.5%)

3. 산업 구조

-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87.1%**를 차지하며,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64.1%**로 **영세**함 ('22년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 전통주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3.68명**으로, 전체 주류업체 평균(6.27명)보다 낮음

* 식료품제조업 소상공인 기준: 연매출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등

4. 수출입 동향

- 2023년 기준 주류 **수출액**은 약 **3억 6,5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15억 10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약 4.1배 규모
- **전통주 수출액**은 약 **2,404만 달러**로, 2019년 이후 **약 38.5% 성장**함

* 전통주류 수출액: ('19) 1,736만불 → ('20) 1,822 → ('21) 2,352 → ('22) 2,466 → **('23) 2,404**

◇ 전북 내 전통주 생산현황

1. 출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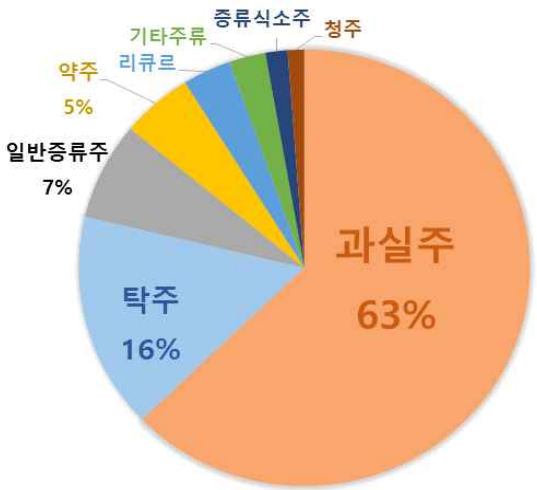
- '23년 전북 2,964㎘ → **전국(23,402㎘)의 12.7% 차지(전국 5위)**

*전남 4,531㎘(19.4%), 경기 3,888㎘(16.6%), 충북 3,020㎘(12.9%), 충남 2,986㎘(12.8%)

- (주요 전통주) **과실주(1,861㎘) 62.8%**, 탁주(474㎘) 16%

<'23년도 전북 전통주 출고량>

주 종	출고량(㎘)	비율(%)
합 계	**2,964**	**100.0**
탁 주	474	16
약 주	152	5.1
청 주	35	1.2
과실주	**1,861**	**62.8**
증류식소주	47	1.6
일반증류주	214	7.2
리큐르	104	3.5
기타주류	7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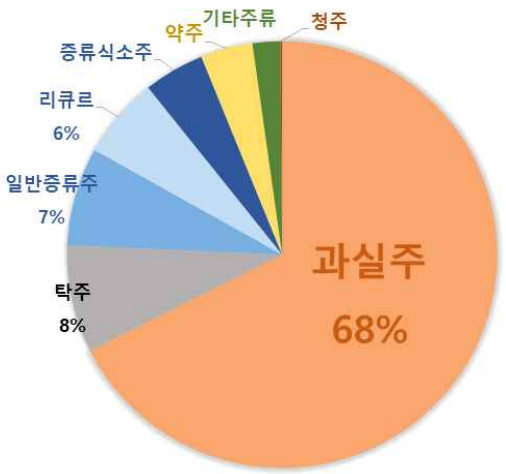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2. 출고액

- '23년 전북 262억원 → 전국(1,475억원)의 17.8% 차지(전국 1위)
  * 전남 220억원(14.9%)
- 과실주 출고액이 177억원으로, ㎘당 출고액이 높아 출고량에 비해 높은 출고액을 보임

<'23년도 전북 전통주 출고액>

주 종	출고액(백만원)	비율(%)
합 계	**26,220**	**100.0**
탁 주	2,136	8.1
약 주	1,027	3.9
청 주	34	0.1
과실주	**17,713**	**67.6**
증류식소주	1,199	4.6
일반증류주	1,952	7.4
리큐르	1,614	6.2
기타주류	545	2.1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3. 제조업체

- **전통주 업체 67개**('23년 기준), 이 중 민속주 제조업체 3개* 업체
  * 전주이강주(조정형 명인), 태인합동주조장(송명섭 명인), 송화양조사(조영귀 명인)
- 국세청이 발급한 도내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는 **'23년 기준 171개**로(누적) 전국 1,812개의 9.4% 차지함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2025.2.1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2023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보고서」
- 국세청「국세통계포털」
- 전통주 정보포털 더술닷컴 (www.thesool.com)

◇ 전통주 관련 통계 ('21~'23년)

□ 전통주 제조면허 발급 현황

(단위 : 개)

구분(누적)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1,401	(100%)	1,561	(100%)	1,812	(100%)
전북(%)	140	(10.0%)	156	(10.0%)	171	(9.4%)

※ 면허발급 주체 : 국세청

□ 출고량 현황

○ 전체 주류 및 전통주 출고량

(단위 : kℓ)

연도	전 국		전 북	
	전체주류	전통주(비율)	전체주류	전통주(비율)
2023	3,237,036	23,402 (0.7%)	443,493	2,964 (0.7%)
2022	3,268,623	23,972 (0.7%)	438,697	3,130 (0.7%)
2021	3,099,828	18,659 (0.6%)	437,227	2,363 (0.5%)

○ 전통주 주종별 출고량

(단위 : kℓ, %)

연도	구분	합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3	전국	23,402	12,739	2,497	494	2,775	1,942	1,470	771	715
	전북	2,964	474	152	35	1,861	47	214	104	77
	(도내%)	(100)	(16.0)	(5.1)	(1.2)	(62.8)	(1.6)	(7.2)	(3.5)	(2.6)
	(전국대비)	(12.7)	(3.7)	(6.1)	(7.1)	(67.1)	(2.4)	(14.6)	(13.5)	(10.8)
'22	전국	23,972	12,002	2,581	378	2,979	2,428	2,137	906	561
	전북	3,130	471	162	21	2,049	48	189	107	83
	(도내%)	(100)	(15.1)	(5.2)	(0.7)	(65.5)	(1.5)	(6.0)	(3.4)	(2.6)
	(전국대비)	(13.1)	(3.9)	(6.3)	(5.6)	(68.8)	(2.0)	(8.8)	(11.8)	(14.8)
'21	전국	18,659	9,842	2,152	409	2,385	887	1,273	664	1,048
	전북	2,363	331	114	11	1,555	22	193	88	51
	(도내%)	(100)	(14.0)	(4.8)	(0.5)	(65.8)	(0.9)	(8.2)	(3.7)	(2.1)
	(전국대비)	(12.7)	(3.4)	(5.3)	(2.7)	(65.2)	(2.5)	(15.2)	(13.3)	(4.9)

□ 출고액 현황

○ 전체 주류 및 전통주 출고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	전 국		전 북	
	전체주류	전통주(비율)	전체주류	전통주(비율)
'23	10,069,489	147,531 (1.5%)	1,194,046	26,220 (2.2%)
'22	9,970,322	162,912 (1.6%)	1,198,270	25,734 (2.1%)
'21	8,834,539	94,149 (1.0%)	1,146,533	17,364 (1.5%)

※ 전국-전체주류 주요 주종별 출고액(억원)(주정 제외)

- '23년 : 맥주(41,866), 희석식소주(39,938), 탁주(5,226), 기타주류(3,064), 과실주(1,378)
- '22년 : 맥주(41,486), 희석식소주(39,842), 탁주(5,190), 기타주류(2,991), 증류식소주(1,412)
- '21년 : 맥주(36,261), 희석식소주(35,450), 탁주(5,098), 기타주류(2,716), 과실주(1,278)

○ 전통주 주종별 출고액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합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3	전국	147,531	49,746	14,967	1,905	27,537	26,738	13,741	9,234	3,663
	전북	26,220	2,136	1,027	34	17,713	1,199	1,952	1,614	545
	(도내%)	(100)	(8.1)	(3.9)	(0.1)	(67.6)	(4.6)	(7.4)	(6.2)	(2.1)
	(전국대비)	(17.8)	(4.3)	(6.9)	(1.8)	(64.3)	(4.5)	(14.2)	(17.5)	(14.9)
'22	전국	162,912	46,340	14,741	1,651	29,686	47,665	12,567	7,504	2,758
	전북	25,734	1,579	867	18	18,395	975	1,773	1,621	506
	(도내%)	(100)	(6.1)	(3.4)	(0.1)	(71.5)	(3.8)	(6.9)	(6.3)	(2.0)
	(전국대비)	(15.8)	(3.4)	(5.9)	(1.1)	(62.0)	(2.0)	(14.1)	(21.6)	(18.3)
'21	전국	94,149	31,487	11,320	1,439	21,403	10,696	8,402	5,948	3,454
	전북	17,364	692	457	9	12,448	425	1,693	1,292	346
	(도내%)	(100)	(4.0)	(2.6)	(0.1)	(71.7)	(2.4)	(9.8)	(7.4)	(2.0)
	(전국대비)	(18.4)	(2.2)	(4.0)	(0.6)	(58.2)	(4.0)	(20.1)	(21.7)	(10.0)

2.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25.3.19.)하고,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우주분야 인재 연 1,500명 양성으로 2045년까지 3만 명 신규 양성

1 추진 배경

○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 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

○ 이에 우주항공청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2 (Student)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 확산

○ **(학교 교육 연계)**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

※ 늘봄학교(초), 자유학기제(중), 고교학점제(고) 활용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 **(스텝업 문화저변확산)**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 저변 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

※ 우주항공 인프라(시민천문대 등)와 협업, 우주항공청 대표 미래인재 프로그램으로 '스페이스 캠프', 우주영재를 위한 'AI 활용 STEM 교육', '큐브위성 경연대회' 진행

< 우주항공청 대표 조기인재 양성 및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

명칭	스페이스 캠프 ('25~)	스페이스 셔틀 ('26~)
프로그램	○ 망원경 조립 및 천체관측 ○ 우주센터 우주인 훈련장비 체험 ○ 나로우주센터 견학	○ 우주 like U(가칭) ○ 천체관측 및 모형항공기 체험 ○ 우주항공 진로체험강연
주요내용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 프로그램 우주비행사 훈련체험 나로우주센터(누리호 발사장) 견학	소외지역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대학·산업체 학과, 동아리 응원프로그램 대상별, 수준별 맞춤 진로강연

3 (Technology)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 양성

○ **(임무중심 우주항공 R&D)**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할 예정

※ △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등 전략기술을 우주항공기술에 적용

△ 산업계, 연구계 수요에 맞춘 위성정보 활용 인력 교육 강화

○ **(지역 정착 인재양성)**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

※ △ (교육부 협력) 글로컬대학, RISE체계, 첨단산업 부트캠프를 통한 인재 양성 검토

• **우주항공 첨단산업 부트캠프**: 매년 300명을 교육하여 4년간 1,200명 양성('25~'28년)

△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교육 강화를 위한 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연계 지원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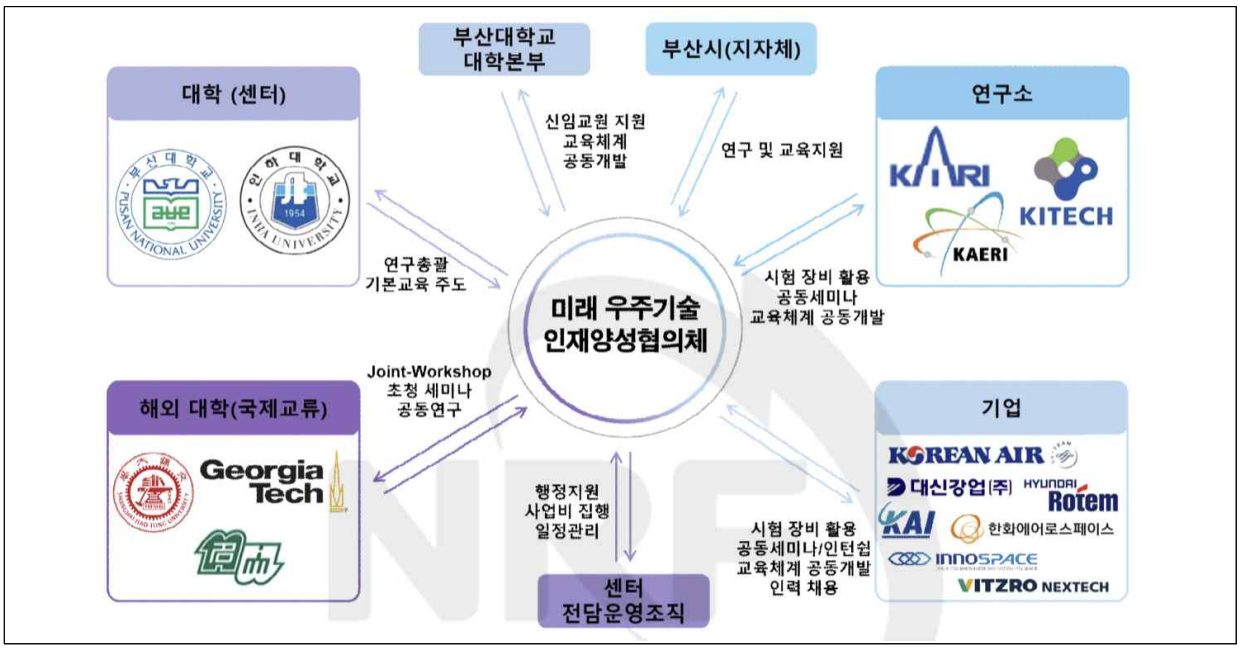
< 글로컬대학 혁신 사례 >

대학	주요내용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CSA)** 설립(입학정원: '24년 107명(신설)→'27년 250명(증원))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 설립('25년 입학정원: 석사 99명, 박사 29명) - 구조·해석 등 특수기술 전공 개설, 대학-연구센터 중복 소속으로 연구 수행
창원대	▸대학-출연연이 협력하여 **우주항공공학부** 등 DNA분야 중심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신설·운영**, 국내외 기업 및 대학과 교환·교류 프로그램 운영
순천대	▸**우주항공** 기초·실무 교육을 위한 **현장캠퍼스(고흥)** 구축('24~'27년), 우주항공 실습·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조성, 실무형 교육과정 등 지원

< 참고> **산-학-연 공동연구 우주기술 인력양성 우수사례**

▸ (**미래우주교육센터**) 부산대는 우주발사체 및 수송 관련 기초·응용 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운영 중

- 대학(인하대 등), 출연연(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산업체 등 총 14개 기관이 공동으로 우주수송 부문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 진행 중
- 산·학·연 공동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구축 운영중으로, 학점교류, 산학연계 과정 등을 통한 전문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 병행 실시



< 산·학·연 연계 체계도 >

4 (Relations) 국내 · 외 협력체계 강화

○ **(인프라 협력)** 학교·연구소의 연구·실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등 기업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을 추진

※ 대형장비,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에 대한 공유·개방 강화로 연구인력 양성 추진

○ **(글로벌 협력)** 세계 우주기관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

※ △ 한미 협력(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추진
△ 국제거대전파망원경 국제기구 참여 등 다국가간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

5 정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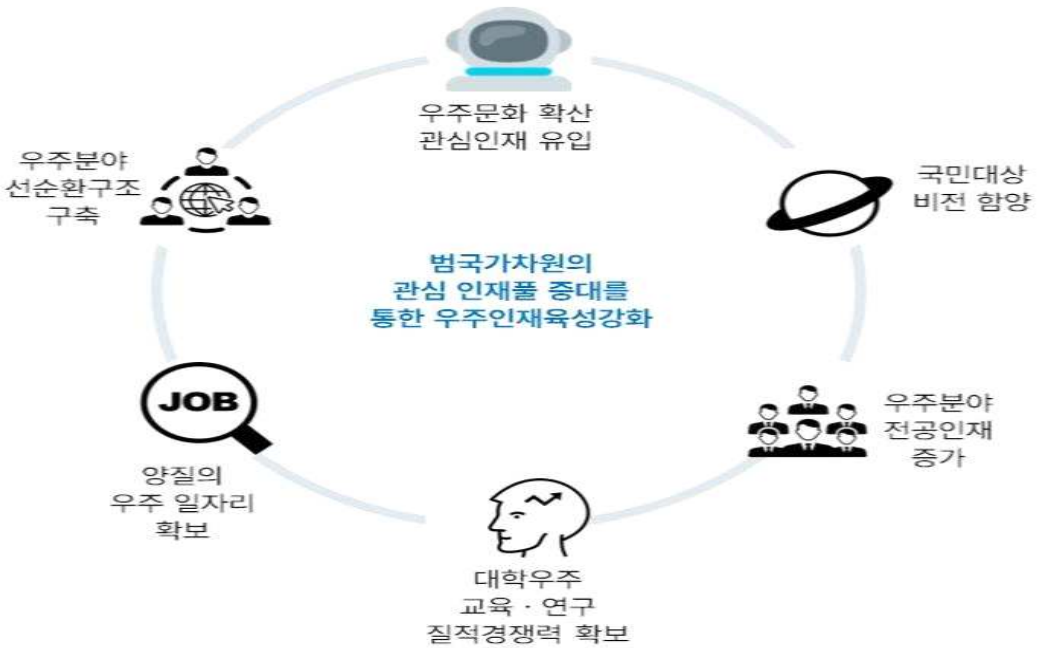
☞ **2045년 전문인력 3만명 양성 목표**
[기존] 연간 300명 배출 수준 ⇒ [향후] 연간 1,500명 양성

○ **(조기양성)**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 위해 **관심인재 조기전력화**

○ **(인재Pool 확보)** 인재양성 인프라 체계 구축으로 **수요맞춤형 인재 확보**

○ **(선순환 체계 구축)** 저변확대, 관심증대를 통한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확립**

<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바이오방위사업과]

○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24년 5월 우주항공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하여 '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전북자치도에서는 '18년 항공기 윙렛 복합재 수리공정기술(MRO)사업* 선정 이후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없는 실정으로, 다만 캠틱종합기술원에 우주항공사업부에 우주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기간: 2018~2022(5년간)/사업비: 119억원(국비 88, 기타 31)

○ 금번 우주분야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전북대학교 우주항공학과는 1992년도 학과를 개설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

○ 또한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로봇, 공기역학, 우주환경구조, 추진 및 연소 실험실 등을 운용하고 있어,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 강화가 필요함

○ 타 자치단체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 부산시, '19년부터 지역기업(나라스페이스)과 함께 부산항 일대의 해양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초소형위성 '부산SAT'을 개발 중, '24.9월에는 대학(부산대 등)·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우주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

○ 인천시, '21.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개편, 인하대 항공우주 관련 학과(3개), 전문대학원 및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유치, 우주탐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 대전시, '22.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

'24년부터 KAIST에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347억원)를 구축, 국방우주 3D프린팅 제조센터(250억원), 초소형 위성 대전SAT 개발(54억원, 나로호 탑재 예정), 차세대 우주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사업(78억원) 등을 추진

○ 전남도,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22.12월 지정)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31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할 계획, 건립 중인 국가산단('24.6월 예타면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입주할 예정,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24년 착공), 국방위성 발사시설('25년 착공) 등을 구축

○ 경남도, '33년까지 민군 겸용 미래항공비행체 개발(2,790억원)·경남스페이스파크* 조성(7,823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 1.21일에는 사천·진주·고성 권역을 우주항공청·경상대와 연계하여 우주 관련 제조업·R&D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최근 진주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진주샛(JINJUSat)-1B' 발사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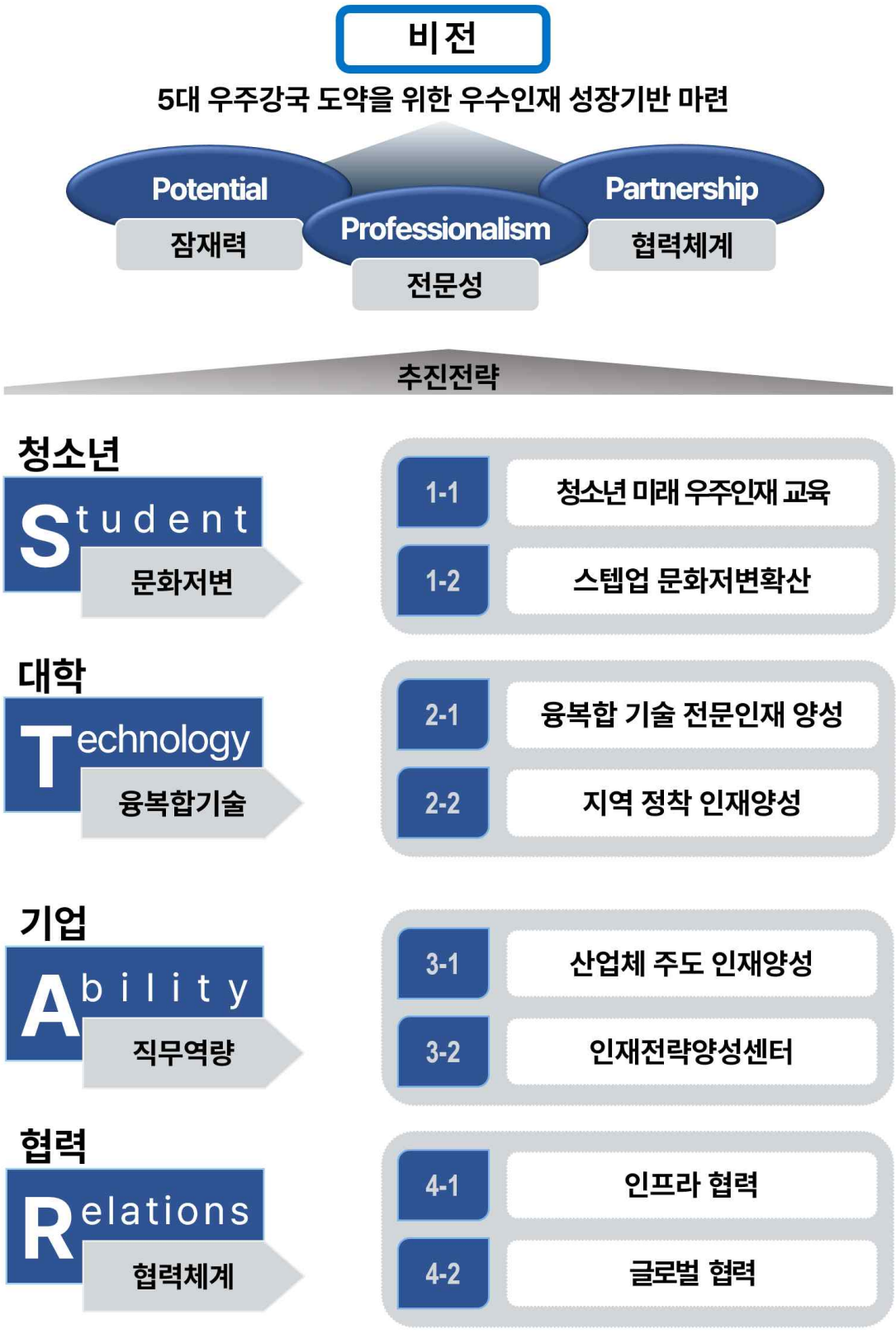
*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센터, 우주산업기술시험센터 등 기술 실증기관으로 구성

○ 전북자치도에서 우주항공 인재 양성과 우주분야 사업 추진 기반 육성을 위한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광역자치단체 우주항공산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자	비고
경기도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12.31.	
경상남도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5.19.	
경상북도	ws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12.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11.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12.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7.12.	

참고1 우주항공 인재양성 비전 및 추진전략



참고2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 (Student)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확산	
1 학교 교육 연계 청소년 미래 우주인재 교육	
❶ 학교내 우주항공 잠재인력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연계 및 지원	'26~
❷ 교내 우주항공 분야 동아리 활성화 지원	'27~
2 학교 밖 스텝업 문화저변확산	
❶ 청소년 문화저변확산 외부 협업체계 강화	'25~
❷ 청소년 대상 인재 양성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25~
❸ 우주항공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5~
❹ 우주항공 AI 활용 STEM 교육 확산 위한 앰버서더 운영	'25~
❺ 미래세대 우수인재 대상 특화 경연대회 실시	'26~
2. (Technology)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양성	
1 임무중심 우주항공 R&D	
❶ 임무중심형 융합형 기술개발 통한 인재 양성	'25~
❷ 12대 전략기술과 연계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	'25~
❸ 위성정보 활용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25~
2 지역 정착 인재양성	
❶ 국가 우주산업 정책을 통한 지역 정착 인재양성 추진	'26~
❷ 지역 특화형 대학 전공 개설 및 연동 강화	'24~
❸ 타부처 협업을 통한 우주항공 대학교육 기반 확충	'24~
3. (Ability) 산업체 직무역량 강화	
1 산업체 주도 인재양성	
❶ 현장 수요중심형 현직자 역량강화 실무교육과정 운영	'25~
❷ 첨단산업정책 연계 실무형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25~
❸ 기업 우주프로젝트 연계 실무인력 양성 아카데미 개발	'27~
2 인재전략양성센터	
❶ 산·학·연 기반 우주기술 인재 전략양성센터 운영	'25~
❷ 우주항공청 임무연계 인력양성 임무센터 지정·운영	'24~
❸ 중장기적 인력양성을 위한 우주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	'27~
4. (Relations)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1 인프라 협력	
❶ 우주항공 거대 연구·실험시설 공동활용 체계 구축	'25~
❷ 우주항공분야 인프라·교육 콘텐츠 공유 강화	'26~
2 글로벌 협력	
❶ 국제공동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인력 교류 지원	'25~
❷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인력 교류 확대	'25~
❸ 글로벌 우주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6~
❹ 글로벌 우주항공 정책 대응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 추진	'27~

3. 경제규제 개선 과제 (관계부처 합동)

◇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24.3.19)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배경)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2차례 규제대책** ('22.7~) + **3차례 투자 대책**('23.11, '24.3, '24.12)을 발표·추진

▪ **경제단체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대책** 등 지속 마련 중

* (구성) 경제6단체, 10대 핵심산업, (개최) '24.5월, 9월, 12월

□ (방향) ❶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❷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11개 과제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

○ 최근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新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추진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 중기중앙회-기재부 협업하여 운영('24.12~)

** ❶**국민·기업 체감형** 규제개선(규제학회, '24.8~12), ❷**AI,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8~12)

▸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행정부담 경감 및 혼란 해소, 행정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현장 불편 해소 과제

▸ (**신산업: 6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데이터, 수소 분야 중심 맞춤형 규제 개선

※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 단계적 규제 개선 추진

Ⅱ.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1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행안부

○ **(현황)** 지자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한정**적

* 간소화 서비스 업종 수(개): ('13)27 → ('15)34 → ('17)49 → ('19)53 → ('23)56

- (예)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

현장의 목소리

■ 폐업 소상공인: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관할 구청에만 폐업 신고를 했는데, 폐업 처리가 안 되어 업종 유지시 필요한 교육을 듣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추진방안)**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25.上~)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행안부 예규)

2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조달청

※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접수과제

* MAS(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현황)** 다수 공급자 계약(MAS) 기간은 **2~3년**이나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유효**

▪ 또한, QR코드 인증 등 여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 **진본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본 제출로 한정**하여 **발급비용** 등 부담 발생

현장의 목소리

■ K기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기간과 계약기간이 상이하고, 시험성적서 발급방법도 QR 코드 등 활용이 가능함에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큽니다.

○ **(추진방안)**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1년 내 → 2~3년)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

※ 다수공급자 계약 지침 개정('25.6월)

3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 개선 산업부

○ **(현황)**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1]에 입주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2] 부여

1」 산단형(마산, 군산 등), 항만형(부산항, 인천항 등), 공항형(인천국제공항 등)
2」 지방세(취·등록세) 100% 감면(조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임대료 10년 감면

▪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 **모호***하여,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애로

* ①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업종이면서, ②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
↳산업단지형(산업부), 항만형(해수부), 공항형(국토부) 3개 유형별 관리권자가 상이

현장의 목소리

■ 입주 희망기업: **자유무역지역 중 어디에 입주할지 고민 중인데 지역별·관리기관별 입주 가능 여부 해석이 달라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 **(추진방안)**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 및 명확화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25.下)

4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산업부

○ **(현황)**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이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음

* 건축면적 500m² 이상인 공장 설립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나, 500m² 미만인 공장은 대부분 공장설립 승인 없이 **공장등록** 가능

▪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500m² 미만) 공장 창업자는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 혜택을 **인지하기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 소규모 공장주(창업기업): **저희는 공장 등록할 때 창업자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서 면제신청을 못했는데, 옆에 큰 공장은 신청하여 면제받았다고 하네요.**

○ **(추진방안)**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소규모 공장**(500m² 미만) 창업기업 대상 「**공장등록신청서**」에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9호 개정('25.7월)

5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 국토부

○ **(현황)**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후 **분양사업장**(비주택 모델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국토부 고시) : ①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 (現 사업절차)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 **분양사업장 설치**

- **국토부**는 **분양신고확인증** 교부(분양신고 수리) **전에도 분양사업장**(가설건축물) **축조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中**
-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불구, **일부 지자체**는 '설치'의 의미를 '가설건축물 공사 착공'으로 보아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 착공 불허**

현장의 목소리

■ 분양사업자: 국토부는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공사 착공을 허용하지 않아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추진방안)**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25.9월)

2 新산업 · 기술 촉진

1 (바이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 복지부

○ **(현황)**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R&D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혜택* 제공 중

* ❶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❷연구개발인력 비용 법인세액 공제, ❸연구시설 건축시 입지규제 완화, ❹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

- 현행 인증기준이 **❶정성평가**로 이루어져 객관성 부족, **❷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 부재** 등으로 문제 개선 요구

현장의 목소리

■ 인증심사 참여 기업: 심사평가시 R&D 투자규모, 글로벌 협력 R&D 확대 등 혁신노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진방안)**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 **신설** 및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 제도개선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수출규모 등을 정량지표로 도입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

2 [바이오]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 복지부, 중기부

○ **(현황)** 국가 **R&D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격제한*** **기준 적용중**

*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R&D사업 참여 제외

현장의 목소리

■ H기업 : 과기정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개선하여 바이오분야 R&D사업에 대해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부처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 **(추진방안)**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 허용***

* 과기정통부·산업부는 자격제한 조건을 旣 완화('24.下) → 전부처 확대

※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

3 [데이터] 위치정보 · 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방통위

○ **(현황)** 現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4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현장혼란 발생·행정부담 가중**

*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예) 위치정보 수집, 위치기반서비스 동시 제공시(예: 공유차량)는 이중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현장의 목소리

■ 위치정보사업자(S社): 위치정보 및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추진방안)** 사업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유형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단일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 [모빌리티]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 서울시

○ **(현황) 강남 일부 지역**(강남시범운행지구 약 16.5km²), **평일 심야시간**(23시~익일 05시) 내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중**('24.9월~)

> **현장의 목소리**
> ■ 자율주행택시 사업자: 한정된 자율주행 구간 및 시간 내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여,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큽니다.

○ **(추진방안)** 폭넓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주간 신규 운행, 심야 운행시간 확대 등) 및 **운행대수**(現 3대) **확대**

※ '25.下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행시간 확대하여 허가('25.7월)

5 [수소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산업부, 국토부

○ **(현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도입*·확산** 중

* 순 에너지 소비를 제로(0)로 만드는 녹색건축물 → '25년부터 1,000m² 이상 일부용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등급 상향(5→4등급)

▪ 수소연료전지 중 **발전전용 시스템*의 평가방법**(사용시간, 적정 용량 등)이 부재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

* 열생산을 주로하는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제로에너지인증에서 평가 중

> **현장의 목소리**
> ■ 민간 건축주: 일조량이 한정적인 도심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인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는 열병합발전 시스템만 반영되어 설치를 망설이게 됩니다.

○ **(추진방안)**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등급평가 시 **발전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 마련** 및 에너지평가 **프로그램 반영 추진**

6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국세청

○ **(현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 **사전심사제도***가 있으나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 등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

*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로 추후 세무조사로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

현장의 목소리

■ K기업: R&D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몇 년 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거 공제금액이 전액 환수되고,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제인정 요건을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 **(추진방안)** **과기부·국세청·관련협회 공동 설명회** 반기별 개최,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 제작 등록** 등 홍보 강화

Ⅲ. 향후 계획

1 **(현장소통)**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24.12)을 계기로 기업현장과 소통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과제 검토·협의** 추진

→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개선

2 **(과제관리)** 그간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의 주기적 점검(경제장관회의 등)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개정	행안부	'25.7월
2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 다수공급자 계약 지침 개정	조달청	'25.6월
3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 개선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산업부	'25.下
4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개정	산업부	'25.7월
5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국토부	'25.9월

2 新산업 · 기술 촉진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		
•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	복지부	'25.9월
2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		
•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	복지부 중기부	'25.上
3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통위	'25.下
4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		
• '25.下 자율주행택시 운영사업자 신규 선정	서울시	'25.7월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 「발전 수소연료전지 평가방법 마련」을 위한 R&D	산업부 국토부	'25.4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프로그램(ECO2) 개선		'29년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배포	국세청	'25.5월
• 국세청-과기정통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 설명회		'25.4월,11월

4.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

◇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시설 안전확보,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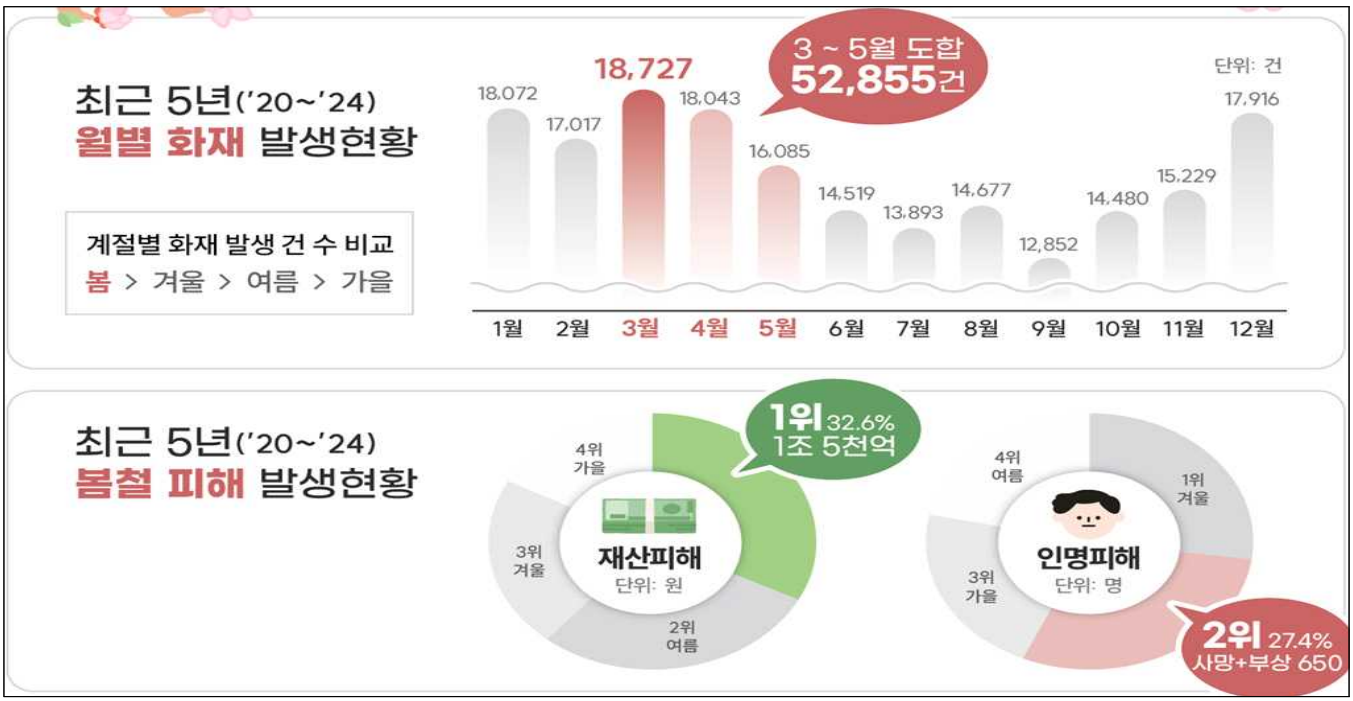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봄철(3 ~ 5월)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28.0%), 그중에서도 3월은 1년 중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18,727건)으로 나타남

○ 특히,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2.6%**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65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소방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봄철 대형화재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함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발생현황 >



2 주요내용

○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며, 지역 축제 및 행사장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

○ 먼저,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우레탄폼과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사전신고제 운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SNS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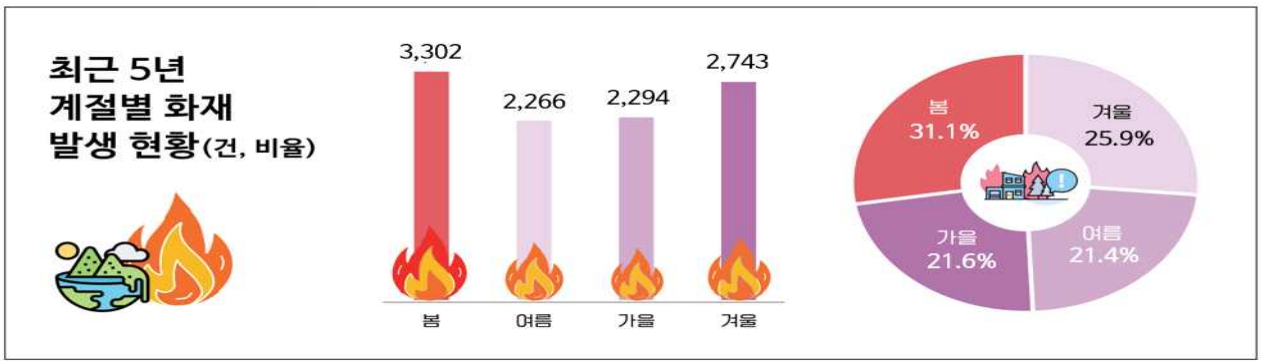
○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역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

○ 주거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과 **'불나면 살펴서 대피'** 영상물을 통하여 홍보할 방침

○ 마지막으로 봄철 농촌에서 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임야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함께 이에 대한 주의당부에 나설 예정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최근 5년간 (2020년 ~ 2024년)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605건** 중 **봄철 (3 ~ 5월)에 발생한 화재**는 **3,302건** (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철 25.9%, 가을철 21.6%, 여름철 21.4% 순으로 나타남



○ 봄철 발생한 **3,302건의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13건** (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이 513건** (15.5%)으로 뒤를이었고, 장소별로는 **야외 및 임야에서 22%**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주거시설 20%, 산업시설 12%** 순으로 집계됨

○ 특히 임야 (들불·산불) 화재는 사계절 중 **봄철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봄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이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가 70.4% (19명)**를 차지함

○ 이에 따라 주거시설의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 화재예방활동 △ 화재위험대비 △ 화재대비대응의 3대 전략과 ▲ 주거안전강화 ▲ 피난약자 보호 ▲ 화재위험제거 ▲ 가정의달 안전 ▲ 교육홍보강화 ▲대응태세확립 ▲지역맞춤특수시책의 **7개 중점 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화재예방활동

○ 주거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소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물품 보급**

○ 또한 요양병원, 산부인과 등 **피난약자가 많은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현장, 축사시설,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사전 점검 실시

2. 화재위험대비

○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1만㎡ 이상), 학교 기숙사, 축사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

○ 도민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SNS와 언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

3. 화재대비대응

○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대비 및 대응태세 확립 및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4. 지역맞춤 특수시책

○ 농촌마을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을 담당제'를 운영하고,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대 방송수신기를 활용한 화재 예방 홍보 방송 진행

○ 또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화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아울러,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소방지벽, 질식소화덮개, 상방향방사장치,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 타 시도의 경우, 산림 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경상북도('23.7.13.), 대구광역시('25.4.10.), 울산광역시('23.5.13.)

◎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도내에서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산불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봄철 화재예방대책

1 추진개요

○ 추진목표 : 봄철 기간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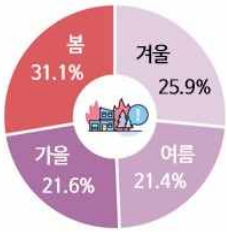
○ 추진기간 : '25. 3. 1. ~ 5. 31.(3개월)

봄철 화재통계(최근 5년, 전북)

구분	평균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화재발생(건)	660.4	621	733	700	542	706
화재사망(명)	5.4	5	7	4	6	5

※ 장소 : 야외·임야(22%) > 주거(20%) > 산업시설(12%)
※ 원인 : 부주의(64%) > 전기적(16%) > 기계적(8%)





2 추진과제 : 3대 전략 7개 중점과제 20개 추진대책

전략	중점과제	추진대책	비고
화재예방활동	주거안전 강화	1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 1,442개 단지(아파트아이)
		2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 525개 단지 / 1,784동
		3 화재안전취약자 안전물품 보급	· 15,270가구 / 29,287개(8종)
		4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지도	· 쪽방촌 등 258개소
	피난약자 보호	1 노유자시설 합동소방훈련	· 요양병원 87 / 요양원 192
		2 피난약자 입원 의료시설 관계인 소집교육	· 산부인과 등 119개소
		3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매주월요일	· 노유자시설 279개소
화재위험대비	화재위험 제거	1 건설현장 현장방문행정	· 1만㎡ 이상 78개소
		2 학교·기숙사 자율안전관리 간담회	· 학교 787 / 기숙사 58
		3 축사시설 화재예방활동 조사·훈련·순찰	· 축사 9,969개소
		4 고시원 등 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 고시원 등 1,406개소
	가정의달 안전	1 야외 캠핑장 이용자 안전 확보	· 캠핑장 171개소
		2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 대비 안전 강화	· 키즈카페 등 301개소
		3 부처님 오신 날 등 지역축제장 안전 강화	· 전통사찰 등 341개소
	교육홍보 강화	1 (홍보) 화재원인분석, 소방시설, 법령 제·개정	· 분야별 월 1회
		2 (교육) 도민 소방안전교육	· 언론매체, SNS 등
화재대비대응	대응태세 확립	1 특별경계근무 청명·한식, 부처님 오신 날	· 인력 11,647명 / 장비 567대
		2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 소화전 등 10,005개소
지역맞춤 특수시책		1 <본부> 농촌마을 화재안전, 전기차 충전구역	· 2건 이상
		2 <서>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1건 이상

참고2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관내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제2호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한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 등을 포함한다.
4.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재난방지법」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동행휴가 신설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심각해지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

1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제7조 제7항, 제15항

2 추진배경

○ 지방의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출생률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이 선도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1) 남성의 육아 참여 제도 미비

○ 그동안 여성 공무원에게는 임신검진휴가가 제공되어 왔으나,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고자 할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음. 이는 실질적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한하고, 임신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로 지적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성평등적 육아문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 초기부터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대두

2)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0일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하는 것. 기존에는 이에 해당하는 명확한 제도가 없어 연가 사용에 의존했으며, 이는 **휴가 사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족 단위의 출산 준비를 어렵게 만들었음**

○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을 통해 **남성 공무원도 임신 초기부터 돌봄과 지원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부부 간 협력적 임신기 관리를 가능케 하고,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데 기여

3) 모성보호시간 사용의 의무화

○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담고 있음.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공무원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공무원 가족지원 관련 제도 개선 현황 >

제 도	개선 전	개선 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90일	100일
모성보호시간 승인	재량 승인	임신 초기·후기 의무 승인
임신검진동행휴가	없음(연가 대체)	10일의 별도 휴가 신설

4 기대효과

○ **지방 인구 유출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 가족친화적 복무제도는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 거주를 장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지방에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 요소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 남성 공무원이 임신 초기부터 검진 동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부부가 공동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을 준비하는 문화 확산**. 성별에 따른 돌봄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육 참여의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 **여성 공무원의 업무 지속성 보장**

- 모성보호시간의 실질적 보장은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이는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의 공직 내 활동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조직 다양성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

○ **민간 부문의 제도적 확산 가능성**

- 공공부문이 가족친화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 민간 기업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유사 제도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짐. **전 사회적인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출생률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총무과]

1)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형 주4일 출근제 시행

○ **지자체**에서도 **육아공무원 대상 주4일 출근제* 시행** 등 **가정 친화적 근무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4일 출근제를 전격 시행**

* 충남 주4일 출근제(2세 이하, 1일 재택 또는 집약근무), 서울 주4일 출근제(8세 이하, 1일 재택) 시행 등

○ **전북자치도**는 **지역 인구 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과 민간 확산**을 위해 선도적으로 3월 10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4일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함.

□ **전북형 주4일 출근제 시행**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및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대 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25. 2월말 기준 : 296명(휴직자 제외, 기준일에 따라 변동 가능) / 소방 별도 시행
○ **(시 행)** '25. 3. 10.부터
○ **(주요내용)** 근무유형 선택 실시
- [휴무형] 주4일 출근(8시간 근무), 주1일 휴무 / 집약근무+육아시간
- [재택형] 주4일 출근, 주1일 재택근무 / 육아시간(자율적 사용)
* 업무특성, 현안업무, 육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유서 제출(대상자→부서장)하면 미실시

○ **전북자치도**의 공무원 참여율을 보면 **대상자 296명 가운데 약 68%인 202명이 주4일 근무에 참여를 희망**함. 시행 초기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혹시 상급자나 주변 동료의 눈치 또는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바쁜 업무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지 **대상자로부터 명확한 의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시행상 예상 문제점

○ **전북형 주4일 근무제**는 가정 친화적 제도로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먼저, **업무 연속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특히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특정 요일에 다수 인원이 동시에 **휴무 또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민원 대응이나 내부 협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근무형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주4일 근무제의 대상이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다 보니, 무자녀 혹은 자녀 연령이 대상 기준을 초과한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며 **조직 내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제도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대는 긍정적이나 그에 따라 **복무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하였음. 휴무형과 재택형 등 여러 근무유형이 병행되며, 출·퇴근 기록, 근무계획서 및 실적보고 등의 관리가 까다로워져 **담당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3) 향후 개선 및 확대 방향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분산 체계 강화가 필요**. 휴무형 또는 재택형 근무가 집중되는 특정 요일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사전 협업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 및 대행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 대민 부서 등에는 순환 근무제, 탄력적 인력 운용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

○ 근무형태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확장**이 필요. 현재 제도는 육아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향후 무자녀 직원이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사유를 가진 직원들도 유연근무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필요**. 이를 통해 조직 내 불만을 해소하고 **주4일 출근제의 실질적인 정착 도모**

○ **부서장 및 관리자 대상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이 병행 요구. 주4일 출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및 승진에 있어 유연근무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한 원칙 수립**이 요구됨

6.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에 따른 일부 학교 밀집현상을 완화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

Ⅰ. 추진배경

○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한 상황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은 오히려 증가* 추세

* 이주민 수(행정안전부) : ('18) 205만 → ('20) 215만 → ('22) 226만 → ('23) 246만

○ 다양한 국적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 발생

* 이주배경학생(전체대비 비율) : ('14) 67,806명(1.1%) → ('24) 193,814명(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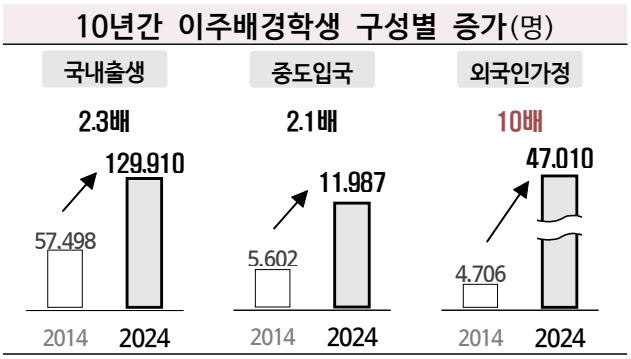
○ 관계부처는 선제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9.)」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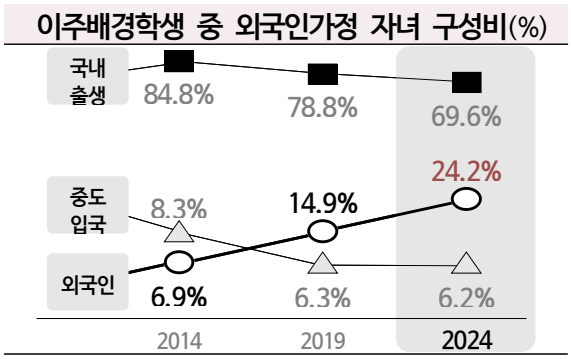
–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국내출생학생 지원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

Ⅱ. 현황 및 진단

□ 이주배경학생 주요 현황

○ (규모·특성) 이주배경학생 규모가 지속 확대 중이며,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 비중, 중고교 학생 비중이 증가* 추세





* 이주배경학생 수(중고교 비중) : ('14) 67,806명(28.3%) → ('24) 193,814명(39%)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밀집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4년 100개교로 매년 증가 중, 대부분 초등학교(84개교)이며 공단지역 인근에 다수 형성된 상황

※ 밀집학교 :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주요 분포 지역) 경기 안산·시흥, 서울 구로·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

□ 현장의 의견

○ 특정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밀집현상 완화 및 지원 강화 필요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초기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취업 지원 내실화 필요

○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교원·강사 등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학교와 지역의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 필요

□ 보완 필요 사항

○ (밀집학교 지원) 밀집현상을 완화하고, 밀집될 경우에도 이주배경·비이주배경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발굴

○ (맞춤형교육)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한국어 역량·체류자격·정주계획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지원체계 강화)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교원 양성·연수 체계를 설계하고,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조성

Ⅲ. 추진 방향

목표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체제 구현**
정책 방향	• **밀집학교 단위 노력 ⇒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집중 지원** • **초등, 한국어 중심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별 맞춤 지원**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	**1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별 밀집도 완화 방안** 마련 - 밀집학교 밀집도 완화 관련 **법적근거 마련** **2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재정 집중 투입** - **교원·지원인력 추가 배치 및 예산·지역사회 자원** 투입 **3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교육 모델 육성** - 밀집학교 대상 **교육과정 등** 자율 운영 **특례 부여** - 지역별 **특색있는 학교 설립**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 지원 - 학생의 **초기 한국어·진로·취업·상담 지원** 강화 **2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포용적 교육정책 추진** - 초등학생 중심 지원에서 **중·고교(직업계고 포함), 영유아, 학부모** 등까지 정책 지원 대상 확장
교원 전문성 강화	**1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교원 **양성·연수 체계** 마련 - 전국 교원·학교 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 모든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 예비교원부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성 과정 개선** - 현직교원 대상 **수준별·단계별 연수** 개설
지원 체계	• **근거법률 제정** • **실태조사** • **지역 자원 연계** • **다문화 인식 개선**

Ⅳ. 추진 과제

1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 교육력 제고

□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

○ (밀집도 완화) 교육청이 지역 여건, 학생의 유형,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학교의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법적 근거) 시도교육청에서 필요시 지역 여건에 맞게 특정학교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재정 집중 투입

○ (교원 배치) 일반학교에 비해 수업·생활지도 부담이 큰 밀집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 추가 배치

○ (지원인력) 교육청별 재정 범위에서 한국어·이중언어강사 등 채용을 확대하며, 대학의 우수한 유학생을 멘토 등 지원인력으로 활용 지원

○ (AIDT 등 활용) AIDT 다국어 번역(웹브라우저 기반 150개 내외 언어)을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 (지역사회 자원·재정) 밀집학교 중심으로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재정 및 인프라를 투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여건 개선

□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교육 모델 육성

○ (특례부여) 교육국제화특구·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교원 배치 등 학교 운영 자율성 부여 검토

○ (학교 특화운영)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학교 설립·운영 지원

2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기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국내출생)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가족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조력

○ (중도입국·외국인) 공교육 진입 및 초기 적응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역량,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포용적 교육정책 추진

○ (중·고교) 초등 중심이던 교육지원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고교 대상으로 확장하여 지원 체계(주된 위기요인인 한국어, 정보, 체류자격 중심) 마련

○ (직업계고) 최근 이주배경학생들의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 직업계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 마련

○ (영유아) 출발선 평등을 위해 이주배경 영유아를 조기 지원하며, 교육과정 개선 및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 (학부모) 한국어,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제도·생활·문화 등 자녀 교육 관련 정보 지원

3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 연수 강화

□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전문교원 양성) 교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을 축적하고 인재 양성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네트워크) 밀집학교에 운영에 대한 사례 공유, 벤치마킹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국·지역 단위로 교원·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모든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 (양성) 예비교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 및 현장 적합성 제고

○ (연수) 현직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이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다문화 이해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단계별·수준별 연수 체계 구축

4 지속가능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구축

○ (법률 제정) 이주배경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증거기반)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다문화교육 주요 학술단체와 연계를 강화해 정책 고도화

○ (지역 기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인력·자원이 한정된 학교 중심 지원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협력에 기반한 지원체계로 전환

○ (인식 개선)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한 이주배경학생 롤모델 발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통계 기준('24.4.1.) 도내 다문화학생 현황은 초·중·고 전체 학생 178,795명 중 다문화 학생은 9,010명으로 5.03% 분포하며 매년 국제결혼 및 중도입국 자녀 등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다문화학생 수(비율): ('22) 8,868명(4.3%)→ ('23) 9,281명(4.59%)→('24) 9,010명(5.03%)

○ 지역별 다문화학생 분포 현황은 전주가 1,871명으로 도내 다문화 학생의 21.7%가 분포하며 지역별 학생 수 대비 비율은 장수가 263명으로 1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교육청은 2025년 10대 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교육'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으로 한국어 및 부모나라 언어교육 확대, 5개 지역 거점형 한국어 학습 운영, 전북형 다문화지원(학습 교재·교구),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2025년 다문화교육 추진 방향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다문화교육 실현'을 목표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지역 거점형 한국어 학급(학급당 15,000~25,000천원 지원)을 다문화 학생이 밀집한 5개 지역(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의 초 6교 9개 학급('24. 3교 6학급)으로 확대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맞춤형 진로지원사업으로 학생 100명(중도입국·외국인 학생 우선

선발)을 대상으로 이·미용, 용접, 굴삭기 등 각종 자격 취득 과정, 음악, 미술, 체육 등 창의성과 신체 역량을 요구하는 예체능 영역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진로교육비(학원 수강비,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사업으로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부모·학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교육자료(교육정책, 상담자료, 가정통신문)에 대한 통·번역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이주배경학생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할 계획임

○ 2025년 다문화교육 지원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세세부 사업명	사업내역	2025 예산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다꿈학교 운영	1. 다문화 지원학교 운영 지원(특교포함) (경상운영비 지원 공립 유초중고 356,000)	58,300
		2. 다문화 정책유치원 운영 지원 (경상운영비 공립 유치원 :28,000)	21,000
		3.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운영 지원(특교포함)	201,000
	문화다양성 교육	1. JB-지구촌 조직·활용(위탁운영비 포함)	124,200
		2. 민간보조사업지원	29,000
		3. 세계시민다움 교수학습자료 개발· 운영	31,910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맞춤형목	1. 중도입국학생 위탁교육기관 운영	62,300
		2.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캠프	45,300
		3. 다문화 학생 진로· 진학 지원	110,000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1. 교육정보번역 지원	20,000
		2. 찾아가는 다문화 상당팀 운영	46,200
		3. 학부모 강의 프로그램 운영	48,440
다꿈교육 지원센터 운영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1.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1:1 집중교육(특교포함)	642,950
		2. 다꿈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386,450
	다문화역량강화 교원 연수	1. 다꿈교육 담당교원 연수	14,280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키오스크 접근성 해소를 위한 지자체 사례 (서울특별시 외)

◇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에 따라 '25년 1월 28일부터 50㎡ 이상 음식점이 키오스크 도입을 하려면 '배리어프리' 도입을 의무해야 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 추진배경

○ 무인화·디지털화 확산에 따라 키오스크가 관공서, 병원, 역,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 급속히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시각·청각·지체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기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보접근권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률상 권리 보장**이 요구되며, 최근 중앙정부와 다수 광역자치단체가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들을 추진함

2 사업개요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범 설치
  · 민간부문(소상공인) 키오스크 접근성 진단 및 개선 지원
  · 관련 교육자료, 사용자 매뉴얼, 안내문 제작 병행

- **추진방식** : **지자체 직접 추진** 또는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연계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물리적·인지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함(음성지원, 점자지원, 화면확대, 높낮이 조절 등)

* **'25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키오스크의 경우 공급가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시행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접근성 향상 조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 시행** 계획임(보건복지부)

· 1단계 (2024년 1월 28일 시행):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 2단계 (2024년 7월 28일 시행):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 3단계 (2025년 1월 28일 시행):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

※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가 적용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비교

- 202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1>참고

- 특히, **서울특별시는 음성 안내·점자 패드가 탑재된 키오스크 설치와 사용자 교육자료 개발** 등 선도적 접근을 보였으며, **경기도**는 도비를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접근성 진단·개선 지원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음[2)]

① 서울시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정책

- **디지털 약자 친화형 키오스크 도입**: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약 5,000대의 키오스크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친화형으로 교체 계획을 발표함. 이 키오스크는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큰 글씨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접근성을 강화 예정
- **'디지털 안내사' 운영**: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안내사'를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지하철역, 관공서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안내하며, **2024년까지 약 690명이 56만여 명의 어르신**을 **지원**함. 새로운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 등을 교육하는 '**온동네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역량 향상 강화

② 경기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사업

- **'말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사업**: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말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음성 인식을 통해 주문을 진행하며, **다국어를 지원**하여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을 높임. 2024년 9월부터 성남시와 포천시에서 시범 운영,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예정
- **광명시 사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 비용**의 **90%를 지원**
- **시흥시 사례**: 관내 모범 소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 전문가 경영 상담,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 등 **'2025 시흥맞춤 명품점포 사업지원'** 진행

2)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어르신 키오스크 공포 해소 역할 톡톡 (서울시 보도자료, 20250214)
경기도, 말로 하는 키오스크 주문 등, 생활 속 AI 서비스 4종 제공. 실증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보도자료, 20240905)

<표1> 전국 광역자치단체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정책 사례

시·도	시행시기	주요내용	비고
서울	2022년~	공공기관 키오스크에 음성안내, 점자패드 설치	장애인 단체 의견 반영, 사용자 교육자료 제공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서울 AI동행버스 운영
부산	2022년~	관광시설 중심 수어·저시력 모드 키오스크 도입	**무장애 관광도시 연계,** 관광안내소 및 문화시설 중심으로 수어저시력 키오스크 설치
대구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시청 주관,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인천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에 접근성 기능 추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기능 추가
광주	2023년~	공공기관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범 설치	노인복지관공공기관 우선 대상 *노인복지시설 중심 교육병행
대전	2023년~	민원실 키오스크 교체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민원실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 교체** 및 접근성 설문 사 병행, 이용자의견 수행
울산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 후 확대 예정,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세종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세종시청 주관,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경기	2023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접근성 진단 및 개선비 지원	**'소상공인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사업** (경기도장애인복지센터 주관 및 '**말로 하는 키오스크지원사업**
강원	2023년~	공공기관 및 관광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관광지 중심 설치, 시범사업(춘천시) 후 공공기관 및 관광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충북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도청 주관,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충남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천안시) 후 확대 예정,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전북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 주로 시·군 단위로 개별적 사업추진 중	시범사업(전주시)실시, (디지털)한글햇살버스 운영, 완주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에듀버스' 운영 남원시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전남	2023년~	**고령자 밀집지역에 음성지원형 키오스크 보급**	농촌형 스마트복지 연계 *농촌형모델 도입
경북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 후 확대 예정,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경남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시범사업(창원시) 실시 후 확대 예정,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제주	2023년~	공공기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추진	관광지 중심 설치, 공공기관 및 관광지 키오스크 접근성(음성안내, 점자 등) 개선

<출처: 각 시·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관계부서: 고령친화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북자치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농촌 지역이 많아,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전북도 차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사업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일부 시·군 단위에서 사업이 자체 추진되고 있음(예: 남원시청 배리어프리키오스크 설치 등)

○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전환으로 **새로운 디지털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이 기기 이용에 제약없이 포용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확대**는 필수적인 부분임

○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의 정보화 기기 사용 현황에서 정보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중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인은 46.2%이며, 스마트 기기 중에서도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가능 비율은 17.9%**에 해당함. 여전히, 노인의 67.2%는 정보화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참고1]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등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도·추진하고 있음. **서울시**는 2022년부터 **’디지털 안내사‘**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철역 등 관공서 등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안내사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총 690명의 안내사가 활동하며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키오스크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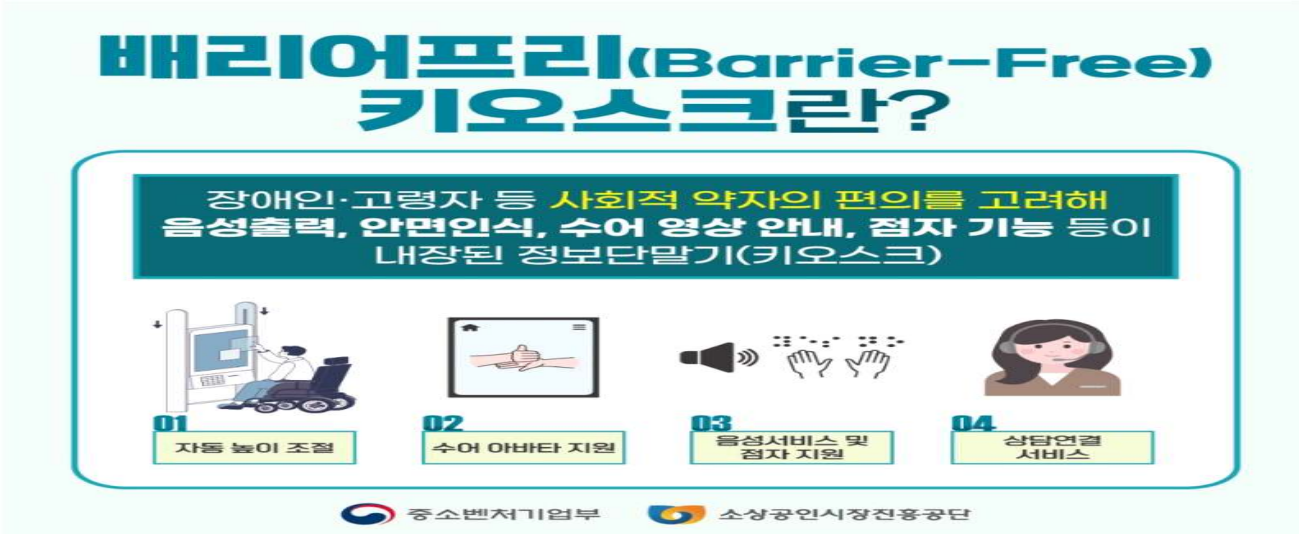
○ **경기도 부천시**는 2021년 전국 최초 **’스마트경로당‘**을 도입 이후, 노인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경로당 150곳에 키오스크를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음. 또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이동형 디지털 교육버스인 **’상상대로 디지털 버스‘** 운영하며 읍면을 순회하며 키오스크 체험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시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소상공인들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어, 도 차원의 보완책이 요구됨

○ 우선 **공공부문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범설치 및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민간 소상공인**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등 타 지자체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 현황에 맞게 적응이 필요함(경기도 사례 참고)

○ 또한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기존 **「정보화 조례」**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조례에 포함된 지원 규정에 따라 **실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울산광역시처럼 디지털 포용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참고2]



참고 1 '23년 노인실태조사 (노인의 사회활동 : 정보화 현황) ('24.10.)

〈표 9-43〉 스마트 기기 활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1]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메시지 받기	83.6	87.2	73.7	89.5	79.0
메시지 보내기	74.7	79.2	62.2	82.5	68.6
영상통화	44.2	46.2	38.4	49.5	40.1
정보검색 및 조회	51.1	54.5	41.4	61.8	42.6
사진·동영상 촬영	52.7	54.7	47.0	60.8	46.3
음악듣기	26.7	27.8	23.6	32.2	22.4
게임	15.0	16.2	11.7	18.6	12.2
동영상 보기	44.2	47.2	35.7	52.5	37.6
SNS 이용	8.6	9.0	7.4	11.6	6.3
전자상거래	12.0	13.0	9.1	14.7	9.8
금융거래	20.2	22.3	14.2	26.4	15.4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3.4	14.8	9.4	18.1	9.7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17.9	19.1	14.4	22.8	1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55)	(7,359)	(2,596)	(4,384)	(5,571)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메시지 받기	97.3	90.8	83.3	66.1	46.3	39.7
메시지 보내기	95.2	82.1	70.3	49.4	30.9	28.0
영상통화	64.8	48.1	33.7	22.0	14.0	9.8
정보검색 및 조회	78.3	54.7	36.6	23.0	15.5	4.5
사진·동영상 촬영	79.0	57.4	40.7	23.1	14.0	7.5
음악듣기	42.6	28.1	17.5	11.2	7.5	2.6
게임	27.0	14.8	8.0	3.9	1.9	1.6
동영상 보기	65.7	49.1	34.0	20.5	10.6	4.4
SNS 이용	17.5	7.8	3.0	0.6	0.9	0.0
전자상거래	25.3	9.9	3.4	1.4	0.8	0.0
금융거래	39.8	18.4	7.5	3.3	2.7	1.4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27.8	10.5	5.3	1.8	0.5	0.3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35.0	15.3	8.3	2.3	3.9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465)	(2,362)	(1,729)	(1,379)	(781)	(239)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메시지 받기	43.3	75.6	91.9	97.5	97.2
메시지 보내기	26.3	59.7	85.2	94.9	94.8
영상통화	10.1	27.8	48.8	63.0	69.6
정보검색 및 조회	6.8	28.8	55.4	76.6	88.3
사진·동영상 촬영	9.7	32.2	57.7	77.5	81.1
음악듣기	2.9	14.0	26.4	42.0	50.8
게임	0.8	4.6	14.2	28.3	24.1
동영상 보기	6.2	24.1	48.3	66.8	75.1
SNS 이용	0.4	2.5	5.4	15.9	23.8
전자상거래	0.2	1.7	7.6	23.4	35.9
금융거래	0.7	4.3	15.1	38.0	52.9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0.7	2.4	9.1	25.3	38.5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0.3	3.6	11.6	34.8	4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84)	(2,810)	(2,127)	(3,132)	(70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노인실태조사' p.541>

참고 2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21.10. 제정)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시행 2021.10.28]
(전부개정) 2021-10-28 조례 제 24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포용의 실태 및 정책성과 분석
3.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 및 지원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포용위원회)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활동의 촉진) ① 시장은 **디지털역량 함양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모든 시민이 디지털역량 함양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역량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교구(敎具)·교재의 개발·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인력의 발굴·지원·양성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6.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및 포상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에 포함된 시민으로서 디지털역량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④ 시장은 정보격차 예방·해소 교육을 포함하는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12조(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개발·활용)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가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디지털포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광역시)

◇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복지비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39세 청년 근로자(2025. 1. 1.기준, 1985. 1. 2.~2007. 1. 1.)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지원규모 : 2,000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2 지원 내용

○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3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8세 ~ 39세(1985-01-02 ~ 2007-01-01)

○ 지원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재직) 인천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2025. 1. 1. 이전 취업자

·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필수

(소득)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월 평균 과세급여 2,870,420원 이하인 자

*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01,750원 이하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4 지원 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자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개인 지원금 수혜자 및 근속(재직)을 통해 지원 받는 지원금 등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인천광역시에서는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은 '23년 시비 1,800백만원(1,500명), '24년부터 시비 2,600백만원(2,000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임금 및 후생복리격차 심화로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 유인 및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 업종(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6개월 이상 종사 청년) 종사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5년 본예산 9,000백만원을 편성(도 재정 상황에 따른 2개월분 900백만원 추경 반영 예정)하여 3,000명에게 1년간 월 30만원씩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로 규정하여 소득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소득기준을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월 평균 과세급여 2,870,420원 이하인 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중위소득120%(청년국민취업)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01,750원 이하

** 세전기준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합계(일괄지급 수당 등은 12개월 분할 반영)

○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장기지원(최대 4년)을 통하여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음

<전라남도 지원내용 :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청년 1,500, 기업 500)>

구 분	지 원 금(만원)			지급시기	
	계	청 년	기 업	청 년	기 업
계	2,000	1,500	500		
취업장려금(1년차)	500	300	200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월 100만원(3개월)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월 66.5만원(3개월)
고용유지금(2년차)	450	300	150	분기별 75만원	분기별 37.5만원
근속장려금(3년차)	550	400	150	분기별 100만원	분기별 37.5만원
장기근속금(4년차)	500	500	-	분기별 125만원	-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전북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자칫 수도권과의 임금격차의 문제로 **전북자치도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및 전북자치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지원을 통한 지원금 상향 및 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정책 '제주의 선물'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본격 시행함

1 추진배경

○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7일 '2025 제1차 관광대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된 4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됨

* 4대 핵심사업 : 여행지원 + 여행주간 + 대도시팝업 + 제주형 관광물가

○ 제주도는 이번 정책에 총 5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모두의 **제주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제주 관광업은 물론 숙박, 음식, 쇼핑 등 연관 산업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 포함

2 주요내용

1.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혜택 대폭 확대

○ 최근 단체관광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지원 기준을 일부 강화하면서도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을 다양화

○ **(수학여행)**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해 안전요원 고용지원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함

- 지원기준 완화 (20인 → 10인), 지원액 확대 (회당 최대 60만원 → 100만원) / 학교별 연 350만원
- 전국 시도별 교육청 대상으로 지원 내용 적극 홍보 및 수학 여행단 사전 예약 없이 한라산 탐방 활동 지원

○ **(일반단체)**

기존 여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매결연·협약단체와 동창·동문회 등까지 인센티브 대상 확대

- (자매결연·협약단체) 20인 이상, 1인당 3만원(차량임차, 숙박 등), 건당 최대 600만원
- (동창·동문회 등) 15인 이상, 1인당 3만원(차량임차, 숙박 등), 단체당 최대 200만원
- 이들 단체는 대규모 인원과 정기적 행사 특성상 안정적인 여행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마이스)**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연중 꾸준한 수요 창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마이스 참가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행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행사와 상품에 대한 지원 인원 기준도 완화

- (국내 마이스 행사) 규모 1,000명 이상 1인당 1만원 (임차, 오만찬, 차량비)
- (해외 마이스) 1인당 지원금액 상향 (2만원 → 2.5만원)
- (유니크베뉴 연계 상품활용) 기준인원 완화 (30명 → 20명)

○ **(뱃길 활성화)**

항공편 감편으로 인한 좌석 부족 문제는 뱃길 관광 활성화로 보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원대상을 일반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

- 지원대상 (여행사 + 일반단체·동호회)
- 개별관광객 지원 (5만원 → 1박 3만원, 2박 5만원, 3박 7만원)

2. 재방문율 향상을 위해 개별관광객 대상 지원책 마련

○ 제주여행주간 이벤트인 '2025 지금, 제주여행' 행사와 연계해 제주공항에서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한 관광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지급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또한 전국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팝업 이벤트*에서도 '제주와의 약속' 서약 참여자에게는 항공권과 숙박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

  * '25.2.8. ~ 더현대 서울 "제주의 선물" 팝업 이벤트 행사 개최

- 이와 함께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디지털 관광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원패스*'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

  * 제주형 원패스 시스템 개발 완료 시점 (7월 예정)

  - 원패스 : 제주관광 자유이용권 (1일권, 2일권, 3일권) + 공영·사설 관광지 할인 혜택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 전북의 경우, 교육여행단의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원 및 접근성 다양화로 미래 잠재 관광객인 청소년의 교육여행 유치와 재방문 유도를 통해 전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 지원내용은 공연·레크리에이션·체험학습 중 택1 (범위내에서 분리지원 가능)을 통해 학생 1인 / 1일 5,000원 (방문 일수에 따라 비례지원) 및 국내외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내국인 1인 / 1일 5,000원, 외국인 1인 / 1일 10,000원)하고 있음

○ 또한, 전담여행사 지원을 통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차량임차비, 숙박비, 문화체험비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금 지급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석도훼리 연계 전북관광 단독 상품 운영 시 입항금 지원 (최대 2박 지원) 및 크루즈 인센티브 (격포항 등 도내 기항 시), 상품개발 홍보비 등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 석도훼리 관광상품 연계 운영 예시 >

▸1박 : 60,000지원 **(입항금 30,000 숙박비 20,000, 임차료 10,000)**
▸**2박 : 150,000지원(입항금 90,000 숙박비 40,000, 임차료 20,000)**
▸3박 : 180,000지원 **(입항금 90,000 숙박비 60,000, 임차료 30,000)**
※ 숙박비, 차량임차료 외 문화체험비도 지원 가능하며, 입항금은 최대 2박(90,000원), 3박 이상 시 일반인센티브 지원

○ 마이스 사업의 경우는 도내에서 행사를 개최·유치하는 단체 및 위임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통해 총점에 따라 차등지원(참가자 수, 회의기간, 파급효과 등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이스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

구분	정의	지원기준
회의 (Meeting) <국내회의>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기업 조직 등의 단체회의	① 참가자(내국인, 외국인) **30명 이상** ② **1박이상 진행되는 회의**
컨벤션 (Convention) <국제회의>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국제적 성격의 마이스 행사	① 참가자(내국인, 외국인) 총 **100명 이상** ② **1박이상 진행되는 회의** ※ **국내회의 전국단위 학술대회는 회의(Meeting)로 적용**
포상관광 (Incentives)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	① 참가자(내국인, 외국인) **20명 이상** ② **1박이상**
전시회 (Exhibition)	유통·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 **30개**, 참가자 **200명 이상** *** B2B 전시회만 해당**
서울 및 호남권 연계 마이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타 시·도가 마이스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도내 관광	① Pre&Post 투어 참가자 **10명 이상** ② 서울시, 호남권(전남, 광주)에서 마이스 행사 전/후, 전북 방문 관광 시(1박 이상) *** (서울시) 1인당 1만원, 최대 500만원 지원** **** (호남권) 1인당 2만원, 최대 500만원 지원**

□ 시사점

○ 제주도에서는 **수학여행단 안전요원 고용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 예정이며, 이는 '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책임부담**과 **학생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조인력 배치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보여짐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안정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25.3.21.**)하였음

○ 따라서, 도내에서도 교육여행단 지원항목 중 **안전요원 고용지원 항목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이를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 1 제주 방문 수학여행단 지원

○ 수학여행 안전요원 고용비 또는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선택 지원)

- 지원대상 : 도외 초·중·고교
- 사업기간 : 3월25일 ~ 8월 29일 (예산 소진시 접수마감)
- 지원내용 : 수학여행 안전요원 고용비,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1회 최대 1,000,000원

인 원 수	지원 금액	
	안전요원	차량임차비
10명~49명	500,000	500,000
50명~99명	600,000	600,000
100명~149명	700,000	700,000
150명~199명	800,000	800,000
200명~249명	900,000	900,000
250명 이상	1,000,000	1,000,000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가능, 인원수 인솔자 (교직원 등) 포함
※ 연 2회 이상 방문 시 회차별 신청 가능, 연 최대 350만원
※ 최초 공고일 (2025.3.7.) 이후 접수된 학교 소급 적용 가능

참고 2 제주 뱃길 이용 단체관광객 지원

○ 도내외 여행업체 : 국내여행업,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 여행보증보험 (공제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함
- 동호회 및 단체 : 특정 취미, 친목, 관심사를 중심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개인들이 모인 동호회 및 단체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동호회 및 단체 / 온라인 (홈페이지, 카페, 밴드 등)상 운영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동호회 및 단체에 한함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000원
- 지원내용

인원수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숙박비 지원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1인당 3만원	1박
		1인당 5만원	2박
		1인당 7만원	3박 이상

참고 3 제주 수학여행단 대상 내륙권 수송지원

○ 지원대상 : 수학여행단 (도외 초·중·고교)

○ 지원금액 : 수학여행단 (인솔자, 학생) 1인당 1만원 지원

※ 학교당 한도 : 1,500,000원

○ 지원기준 : 수학여행단 내륙 집결지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이동(또는 복귀) 시 전세버스 이용 (편도 또는 왕복 / 집결지 ↔ 여객선터미널)

참고 4 제주 뱃길 이용 개별관광객 지원

○ 체류형, 반려동물 동반, 아웃도어 관광객

- 지원내용

연번	대 상	지원금액	비고
1	체류형 개별관광객	1건당 6만원	대표자 1인에 한해 지원 (일행 동시 지원 불가)
2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1건당 3만원	대표자 1인에 한해 지원 (일행 동시 지원 불가)
3	아웃도어 관광객 (자전거, 오토바이 선적)	자전거 : 1대 1만원 오토바이 : 1대 3만원	1대당 지원 (여행대표자 + 일행 지원)

Ⅳ.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Ⅳ.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국회입법조사처 ('25. 3.))

<< 연구요약 >>

◇ 민원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스나, 여전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악성민원의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악성민원 유형 예시 및 처벌규정 신설 필요

◇ 기관장의 세부적인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및 피해 공무원의 소송 관련 재정지원 규정 도입 등의 논의 필요

□ 연구배경

○ 2023년과 2024년, 민원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이는 단순한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넘어,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정부는 2024년 5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 중심에는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이 있으며,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민원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1) 악성민원의 현황과 문제점

○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민원인에 의한 폭언,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의 사례는 13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시·군·구 단위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위협은 공무원의 업무 의욕과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 **일부 민원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무기처럼 사용하여, 과도한 양의 문서나 불필요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행정업무의 과중과 심리적 피로도를 심화시킴

○ 특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 요청하거나 일부러 방대한 문서를 요청한 후 이의 처리 지연을 문제 삼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 이 같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전체 위법행위 중 고소나 고발 등 실질적 대응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함. 2022년까지는 위법행위 대응 비율이 높아지다가, 2023년 1.37%(515건)로 하락함.

○ 위법행위 대응 양상과 관련해, 중앙부처에서는 고소, 고발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의 대응이 신고에 그치고 있으며, 고소와 고발의 비율은 낮은 편임**

<2023년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위: 건)

구분	계	폭언·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기타
소계	21,625	18,692	2,272	110	273	30	248
시·도	875	774	58	6	5	-	32
시·군·구	17,204	15,227	1,567	44	235	11	120
읍·면·동	3,546	2,691	647	60	33	19	96

※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5.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단위: 건)

구분	연도	위법행위	대응현황	신고	고소	고발
계	'23	37,655	515	425	68	22
	'22	41,559	685	545	126	14
	'21	51,883	801	682	70	49
중앙	'23	16,030	209	182	23	4
	'22	14,874	257	155	101	1
	'21	24,750	151	87	34	30
지자체	'23	21,625	306	243	45	18
	'22	26,685	428	390	25	13
	'21	27,133	650	595	36	19

※ 자료: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5.

2) 민원공무원의 보호조치 및 입법논의

○ 현재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은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임.** 민원처리법은 기관장에게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반복 민원에 대한 종결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조치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함

- '민원처리법' 제4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제2항), 담당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제3항). 아울러, 기관장은 이를 이유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제4항)**
- 이 법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종결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 민원의 반복을 방지하고 있음(제23조). 구체적으로, 종결 처리 대상은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② 민원인이 복수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임

○ '정보공개법' 역시 반복적이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어떤 청구가 부당하거나 남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반복 청구는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재청구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워 민원으로 처리된 내용을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임**
- 해당 규정은 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령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청구된 경우도 종결 처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제2항제2호)

○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들 개정안은 **기관장의 보호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반복 또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반복 제기에 대한 제한 규정과 공무원 보호조치의 법률 상향 등도 주요한 내용임.

- 정부가 제출한 '민원처리법' 개정안('24.10.24.)의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 종료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기관장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중복 민원 제기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민원 처리 예외 사유에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을 추가하였다. 동일 민원의 반복에 대한 종결 처리 결정 시 공무 방해 의도 유무도 고려하도록 규정
-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24.10.31.)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시에, 이러한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종결 처리 대상은 ①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청구, ②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청구, ③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청구 등임

3) 제도 개선 방향

○ 우선, **'악성민원'이라는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이 용어가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내부 지침이나 교육 자료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 **반복적, 고의적이며 상대방을 괴롭히는 목적의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법제화해야 함. 정의와 유형이 명확해져야만 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민원인의 권리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음

○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함. 공무원에게 폭언, 협박, 업무 방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민원처리법' 내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함

○ 이는 **공무원 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악성민원을 유도하거나 방조한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항 보완이 필요함

○ **기관장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CCTV 설치, 출입제한, 응대 중단, 녹음장비 지급 등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함

○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현재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나, 향후에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정 조직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며 부서 내 상시 상담창구 설치,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장기 민원 대응 인력에 대한 순환근무제 도입 등도 논의 필요

□ 결론 / 시사점

악성민원은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마련, 공무원 보호조치의 제도적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아울러, **국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전통주 산업의 정책동향과 발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3.12.)]

‹‹ 연구요약 ››

◇ 최근 혼술·홈술 소비 증가, 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증대, K-food로 통칭되는 한식 열풍으로 전통주 제조·유통·소비시장이 양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최근의 주류문화 트렌드 변화에 기반하여, 전통주 산업의 발전 과제로 한국 술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농업·농촌과의 상생 방안 마련, 종합적인 지원기관 설립, K-Food와 연계된 전통주의 홍보마케팅, 전통주와 한식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함

□ 연구목적

○ 전통주 산업은 오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고유의 주류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혼술', '홈술' 문화가 확산되고, 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및 K-food 열풍과 결합되면서 전통주의 소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

○ 전통주의 유통 채널, 소비 트렌드, 창업 형태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으로, 전통주 제조·유통·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 및 정부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주요내용

1. 전통주 제조·유통·소비 트렌드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된 혼술·홈술 문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복 소비와 결합해 전통주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전통주는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 바틀샵 등 새로운 유통 채널과 결합되어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유명 연예인의 전통주 홍보(원소주 등) 와 SNS 확산 효과는 특정 제품의 완판 현상 등 소비를 자극하기도 했으며, MZ세대는 단순 소비에서 나아가 양조 교육을 받고 전통주 제조·유통 창업에 참여하는 추세임. K-food와 연계된 세계적 한식 열풍은 전통주 수출산업화의 기회로 작용함

2. 전통주 산업의 현황

○ 전통주 시장은 2016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며, 2022년 주류시장 점유율 1.6%를 기록하였고, 지역특산주 중심의 출고액이 2018년 336억 원에서 2022년 1,523억 원으로 급증함

○ 주종별로 증류식 소주가 2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2년부터는 탁주보다 높은 출고액을 기록했으며, 제조면허 수는 2017년 943개에서 2022년 1,561개로 증가함

○ 그중 **지역특산주 면허 증가**가 뚜렷함. 수출은 2022년 약 2,500만 달러 규모로 **탁주가 주요 수출품**이며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수출이 활발함

3. 법률상 지원 내용과 정부 정책 동향

○ **전통주**는 **주세 감면(50%), 온라인 판매 허용, 제조시설 기준 완화 등** 다각도의 **법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며 정책자금 지원, 양조장 마케팅, 품평회 개최 등 산업 기반 조성이 병행됨

○ 농축산식품부는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세**계인이 찾는 K-전통주**"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 중임

>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27)』**은 "세계인이 찾는 K-전통주"를 비전 으로 설정하고, 명주 육성 생태계 조성과 한식 연계 수출 상품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이 계획은 **<명주 육성, 유통·소비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통주 품질인증, 유통채널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강화, R&D 및 인력 양성 등 총 10대 과제로 추진됨.
>
> 본 계획은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전통주를 농업, 외식, 콘텐츠 산업과 연계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음

4. 전통주 확산을 위한 발전 방안

○ **전통주 정의의 확대**를 통한, 농식품부 지정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전통방식으로 제조되는 주류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로 지역 단위 제한을 광역지자체 또는 일정 비율의 자율 사용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종합지원기관**(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형태) **설립**으로 품질관리, 교육, R&D 등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콘텐츠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K-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 온라인 포털 및 SNS 채널 강화 모색이 필요함

○ **전통주-한식 연계 전략**을 통해 국내외 한식당, 요리대회 등에서 전통주 페어링 활성화를 통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콜드체인 구축 및 유통 벤더 확대를 통한 품질 유지와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영세 창업자 중심의 전통주 산업 구조상, 품질 확보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초 및 보수 교육을 통한 **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됨

□ 결론 및 시사점

○ 전통주 산업은 과거 민속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현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화된 소비트렌드와 맞물려 전통주의 유통 방식, 법적 지원, 정책 방향에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특히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전통주의 법적 정의의 유연성, 국산 농산물 연계, 유통·마케팅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전통주의 대중화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또한, **주세감면 기준**[3]**과 반출 수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업의 형평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50227) -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kl, 증류주류 250kl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발효주류 1,000kl, 증류주류 500kl 이하인 업체로 확대**하고,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하였으나 **발효주류 200~400kl, 증류주류 100~200kl**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

참고 **'24년 주류시장 트렌드보고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5.3.)**

□ 2024년 대한민국 주류업계 트렌드 및 현황 분석 (결과 요약)

1. 생산 현황

-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른 '23년 전체 주류시장 규모는 출고 금액 기준 10조 695억원으로, '22년 대비 출고금액은 1.0% 증가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종**은 **맥주(52.1%, 41.6%)**이며, **희석식 소주(26.1%, 39.7%), 탁주(10.5%, 5.2%)** 순임

〈표 2-1〉 상위 4개 주종 출고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국세청통계연보)

구분	전체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기타주류	
		출고금액 (백만원)	비중 (%)	출고금액 (백만원)	비중 (%)	출고금액 (백만원)	비중 (%)	출고금액 (백만원)	비중 (%)
2023년	10,069,489	4,186,592	41.6	3,993,772	39.7	522,632	5.2	306,443	3.0
2022년	9,970,322	4,148,585	41.6	3,984,178	40.0	518,974	5.2	299,055	3.0
2021년	8,834,539	3,626,057	41.0	3,545,010	40.1	509,815	5.8	271,633	3.1
2020년	8,799,538	3,497,418	39.7	3,703,775	42.1	470,579	5.3	290,776	3.3
2019년	8,941,278	3,688,267	41.2	3,738,247	41.8	442,967	5.0	252,129	2.8

- '23년 탁주 시장 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약 5,226억원 규모임. '16년부터 '22년까지 **전통주 출고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3년 1,475억원으로 '22년 대비 9.4% 감소함

- '23년 전체 출고량 대비 **전통주 비중은 출고금액 기준 1.5% 수준**임. 전통주 등의 출고량과 출고금액은 '23년 전체 대비 각각 12.9%, 13.4%로, 출고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출고금액은 유사한 수준임

〈표 2-2〉 전체 출고금액 대비 전통주 출고금액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국세청통계연보)

주류 출고금액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9,243,659	9,039,379	8,941,278	8,799,538	8,834,539	9,970,322	10,069,489
전통주	40,029	45,573	53,128	62,664	94,149	162,912	147,531
전체 대비 전통주 비중(%)	0.4	0.5	0.6	0.7	1.1	1.6	1.5

2. 유통 현황

(1) 도매업체 심층 인터뷰

- 2022년 대비 전통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도매업체들은 전통주의 제품 다양화와 젊은 층,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반면, 매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업체들은 경기침체, 가격 상승, 홈술·믹솔로지 트렌드를 매출 부진의 이유로 들었음

- 소비자 성향의 변화와 전통주의 질적 향상, 다양한 제품과 홍보 확대는 실수요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고 있으며, 종합도매업체는 대형 제조사나 수입사를 통해 주류를 조달하며, 특정도매업체는 전국 각지에서 공급받고 있음

- **애로사항**으로는 **리베이트 구조, 주말 근무, 대량 주문 요구, 잦은 법률 개정, 유통 손실, 해상 운임 부담** 등이 언급되었다. 도매업계는 인력난과 경쟁 심화, 온라인 유통 증가, 규제 문제 등 복합적인 현안을 안고 있음

- 전통주는 믹솔로지 열풍과 함께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대 선택 폭이 좁고 소비 확대가 공급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일부 업체는 젊은 층 소비 증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2) 수입업체 심층 인터뷰

- 수입 주류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단일 주종 중심으로 수입되며, 수입 과정에서는 복잡한 절차, 입항 지연, 식약처의 비현실적 행정, 유통 중 파손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주류 산업 전반의 트렌드는 **가격 양극화**와 **저도수 주류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되며, 소비력 저하로 전체 주류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하이볼 유행은 위스키 수요**를 끌어올렸고, 그 트렌드는 데킬라나 칵테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국내 시장도 해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특히 하이볼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업계는 주세 체계, 가격 문제, 시장 축소로 인한 소비 감소, 온라인 직구 피해 우려 등을 현안으로 꼽았음

- 입항 지연, 관세·주류세 부담, 과도한 규제, 경쟁 심화가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고, 스마트오더 시스템은 소매 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인 사례도 있으나 매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업계는 향후 **주세 체계의 완화, 온라인 판매 허용과 같은 규제 개혁, 식약처의 실무 유연성, 시음회·홍보 행사 활성화** 등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함

(3) 소매업체 심층 인터뷰

- 전통주에 대해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소매점에서 체감되고 있음. 주류는 종합도매업자, 특정도매업자, 직매입을 병행해 조달하며, 주종별로 적합한 공급처를 선택해 운영 중임.
- 판매 방식은 일반 주류와 전통주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진열하고, 보관 방법에 따라 배치가 달라진다. 선물용 주류는 별도 매대를 구성하며 주로 3040 남성을 타깃으로, 5만 원 내외 가격대에서 수요가 집중됨
- **홍보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력 제품과 신규 입고 상품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최근 주류 소비는 저가-고가, 저도수-고도수의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막걸리 외 다양한 증류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오크 숙성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 현안으로는 온라인 판매 규제,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있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유통기한 문제가 지적되며, 특히 탁주의 짧은 유통기한이 큰 재고 손실을 초래함

(4) 전문주점 심층 인터뷰

- 2022년 대비 전문주점의 전체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침체와 음주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전통주 매출은 하락했지만, 이는 일반 주류나 하이볼의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 **전통주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제품의 다양화도 긍정적 변화로 언급됨. 주류 조달은 도매업체 및 직매입을 병행하나, 공급구조가 복잡해 일원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으며, 소량 주문 시 단가 상승, 최소 수량 조건, 유통기한 등의 유통 애로사항이 여전히 큼
- **홍보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플레이스를 주로 활용**하며, 주류 트렌드는 저가·저도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음식과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소비자 관심**은 전통 탁주에서 **증류식 소주로 이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주류에 비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음

(5) 통신온라인 판매 심층 인터뷰

- 전통주 판매에서는 소비자들의 익숙함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오프라인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평가가 있었음.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 증가**와 함께 **홈술, 믹솔로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종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 전통주 산업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관심이 빠르게 사그라질 수 있고, **저품질 양조장들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고, 유사 제품이 많아 차별화가 어렵다는 점이 통신판매업계의 공통된 고민임
- 복잡한 주세법과 자주 개정되는 법령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유통 과정 중 제품 변질, 재고 부담, 광고 및 할인 제한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음

3. 주류 트랜드 분석

(1) 전통주

- 키워드 '전통주'에 대한 언급량은 2024년 3월이 15,413건으로 가장 많음. 언급량이 가장 많은 채널은 '블로그'로 그중 언급량이 가장 많은 달은 2023년 10월(6,801건)임
- 연관어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맛집', '메뉴', '술집', '안주'와 같이 전통주와 함께 먹는 음식 또는 그러한 음식을 파는 장소에 대한 연관어가 크게 나타남

(2) 막걸리

- 키워드 '막걸리'에 대한 언급량은 2023년 10월이 71,806건으로 가장 많음. 언급량이 가장 많은 채널은 '블로그'로 그중 언급량이 가장 많은 달은 2023년 10월(35,043건)임
- 연관어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술', '청주', '약주'와 같이 다양한 주류에 대한 연관어가 크게 나타남

(3) 국내산 와인(과실주)

- 키워드 '국내산 와인'에 대한 언급량은 2023년 9월이 118건으로 가장 많음. 언급량이 가장 많은 채널은 '블로그'로 그중 언급량이 가장 많은 달은 2023년 9월(86건)임
- 키워드 '국내산 와인'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류에 관한 연관어와 더불어 '와이너리', '포도', '로제' ,'화이트', '드라이' 등 와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관어가 주로 나타남

(4) 증류식 소주

- 키워드 '증류식 소주'에 대한 언급량은 2023년 11월이 3,418건으로 가장 많음. 언급량이 가장 많은 채널은 '블로그'로 그중 언급량이 가장 많은 달은 2023년 11월(2,010건)임
- 연관어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술', '소주', '전통주', '하이볼' 등 다양한 주류에 대한 연관어가 많이 나타남

※ 본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전통주' 용어는 생산 부문과 유통·소비 부문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주세법의 "전통주" ≠ 통념상의 "전통주"**]

3. 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연구요약 ››

◇ 한국 로봇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로봇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 로봇산업의 과제 제시

□ 글로벌 로봇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로봇산업

○ 로봇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임.

○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제조로봇 밀도*는 1,012대로 세계 1위이며, 한국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임

* 로봇 밀도: 인구 1만명 당 로봇 대수

<전 세계 로봇 밀도 순위(2023년)>

순위	국가	대수
1	대한민국	1,012
2	싱가포르	770
3	중국	470
4	독일	429
5	일본	419
6	스웨덴	347
7	덴마크	306
8	슬로베니아	306
9	스위스	302
10	미국	295

자료: 국제로봇연맹(IFR)

○ 높은 로봇 밀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로봇산업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로봇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임.

○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업 무인화 추세에 대한 대응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기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 지능형 로봇 시장은 2020년~2026년 사이 연평균 12.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세계 지능형 로봇 시장 규모(단위: 십억$, %>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CAGR
세계 시장 규모	70.8	79.5	89.3	100.2	112.6	126.4	141.9	12.29

자료: Precendence Research (2022)

□ 지능형 로봇 시대 한국 로봇산업의 과제

○ 한국형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필요

- 세계의 주요국들이 제조업 현장에 AI가 탑재된 지능화된 로봇 투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로봇의 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한국형 피지컬(physical·물리적) AI 준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로봇산업의 과제

-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AI 기술 역량 역시 선도국에 비해 격차가 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매우 제한적임.

<2024 글로벌 AI 인덱스(상위 7개 국가 항목별 순위)>

종합 순위	국가	실행			혁신		투자		총합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개발 능력	정부 전략	상용화	
1	미국	1	1	2	1	1	2	1	100
2	중국	9	2	21	2	2	5	2	53.88
3	싱가포르	6	3	48	3	5	10	4	32.33
4	영국	4	17	4	4	16	7	5	29.85
5	프랑스	10	14	19	6	4	9	8	28.09
6	한국	13	6	35	13	3	4	12	27.26
7	독일	3	13	8	8	11	8	9	26.65

자료: Tortoise Media (2024)

□ 한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니치 마켓 활용과 Robotics Institute와 같은 로봇 생태계 구축 필요

- 한국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로봇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함.

- 또한 로봇산업의 니치 마켓(niche market·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은 로봇이 니치 마켓이 매우 많은 분야라고 강조함.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헬스케어 로봇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니치 마켓을 찾을 수 있는 대학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현재 고령화와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도 필요함. 그

- 해외의 RI(Robotics Institute)를 참고하여 로봇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니치 마켓을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로봇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이후 효율적 운영

-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2월,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였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기술 개발의 제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정부의 AI 규제

-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와 같이 AI의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정부의 AI 규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이차전지탄소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개방 특허 무상 제공 ▲스마트공장 전문가 양성 ▲국내·외 바이어 매칭 ▲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2024~2026년까지 진행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일련의 효과를 내고 실제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었지만 관련 산업의 육성이나 개발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임

○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임원사 30개, 정회원사 240개, 특별회원사 28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북연고 회원사는 단 1개에 그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고성능·고품질의 농기계 개발하고 있으나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부족한 상황임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로봇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통하여 향후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대상과 연령 기준 간 부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가 필요
◇ 현재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

1. 들어가며

○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계속 높아지면서 청년 연령 상한의 상향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한편, 19~34세 청년인구가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을 보호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

* 일부 기초자치단체 조례 중에서는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까지 규정(40개 기초자치단체)

○ 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의 상한에 대하여 정책 수혜자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청년 연령 상한의 상향과 함께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 연령 기준 현황, 연령 상한의 상향 및 일원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

2. 청년 연령 기준 현황

(1)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 연령 기준

○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2020년 2월 4일에 제정

○ 이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하고,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청년기본법」 외 다른 법령 및 정책별 청년 연령 기준

○ 「청년기본법」 외 다른 법령 및 정책별 청년 연령 기준이 다양

○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창업과 농어업 분야의 법령은 각각 39세 이하, 40세 미만으로 청년을 규정한 연령의 범위가 가장 넓었음

<「청년기본법」 외 법령 및 정책별 청년 연령 기준(25.4.2.)>

분야	법령명	청년연령	비고
고용·일자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5-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15-34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5-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15-34	청년 실업자
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세 이하	청년 상인
	「중소기업창업 특별법」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1인 창초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9세 이하	1인 창조기업
농업업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34세	청년창업중소기업
		15-29	청년 정규직·상시 근로자
		15-34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34세	청년창업기업·중소기업 취업 청년
		15-29	청년 상시 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정치참여	「정치자금법」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 자료: 국무조정실,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1.15., 국가법령정보시스템(최종검색일:2025.4.2.)<https://www.law.go.kr>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 청년 연령 기준

○ 2025년 2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 보다 상한 연령이 높음

○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이 가장 높은 45세인 곳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규정

< 기초자치단체 조례상 청년 기준(25.4.2.) >

지역	연령	지역	연령	지역	연령	지역	연령
서울	19-39	대전	18-39	충북	19-39	경남	19-39
부산	18-39	울산	19-39	충남	19-39	제주	19-39
대구	19-39	세종	19-39	전북	18-39		
인천	18-39	경기	19-39	전남	18-45		
광주	19-39	강원	18-45	경북	19-39		

< 기초자치단체 조례상 청년 기준(25.4.2.) >

지역	기초 단체수	상한 34세	상한 39세	상한 45세	상한 49세	비고
서울	25		24	1		45세(도봉구)
부산	16	2	14			34세(서구, 해운대구)
대구	9		8	1		45세(군위군)
인천	10		9		1	49세(옹진군)
광주	5		5			
대전	5	2	3			34세(동구, 중구)
울산	5		5			
경기	31	3	27		1	34세(성남시, 김포시, 이천시) 49세(포천시)
강원	18		6	6	6	49세(태백시, 양구군, 양양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11		6	3	2	49세(괴산군, 단양군)
충남	15		6	8	1	49세(홍성군)
전북	14		4	7	3	49세(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전남	22			8	14	
경북	22	1	7	8	6	34세(포항시)
경남	18		7	5	6	49세(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계	226	8	131	47	40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최종 검색일: 2025.4.2.), <https://www.elis.go.kr>

○ 한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상한 범위의 편차가 더 더 크게 나타났음

○ 2025년 4월 기준 총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인 34세 이하를 규정한 곳은 3.5%인 8곳에 불과하였고, 39세 이하가 57.9%인 131곳으로 가장 많았음

○ 그 외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는 40곳으로 나타났는데, 상한이 40세 이상이 되는 2곳을 합치면 87곳(38.5%)임

○ 또한, 연령 상한이 49세 이상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아예 없거나 1곳 정도에 불과하였음

○ 반면, 그 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령 상한이 49세 이상인 경우가 강원 6곳(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천), 충북 2곳(괴산, 단양), 전북 3곳(무주, 순창, 장수), 경북 6곳(봉화, 영양, 예천, 울진, 청도, 청송), 경남 6곳(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함안, 함양) 등이며, 특히 전남은 22곳 중 14곳(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 수혜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국회 법안 발의 현황

○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청년 연령에 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총 5건 발의

○ 구체적으로는, 청년 연령의 하한선을 18세로 낮추는 안*, 청년 연령의 상한선을 39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과 더불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단서 삭제를 통해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자는 내용***

* 장경태의원안(2020.11.27.)과 김용민의원안(2022.3.2.) 2건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19→18세)에 맞춰 청년 연령의 하한을 조정하

** 임병헌의원안(2022.6.23.)은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내용인 반면, 윤창현의원안(2023.11.14.)과 김문수의원안(2025.1.25.)은 상한을 39세로 조정하되 매년 1년씩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 임병헌의원안(2022.6.23.)의 내용

3. 연령 기준의 상한 및 일원화 관련 주요 쟁점

(1) 연령 기준의 상향 관련 주요 쟁점

○ 청년 연령 기준의 상한을 올리는 경우 청년의 늦어진 사회 진출 등 현실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취업·결혼·주거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고, 청년 지원 수혜자 확대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 반면, 단점으로는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한선을 확대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적용 대상은 약 3.2백만 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약 6.6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39세 상향 시 지원 대상이 4만 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959억 원이 소요

○ 청년들의 경제적·사회적 위치와 경험,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 이는 다양한 상황과 현실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공통집단으로 묶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2) 연령 기준의 일원화 관련 주요 쟁점

○ **청년 연령 기준의 일원화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첫째, 정책과 기관마다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여 청년에 관한 명확한 연령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

○ 둘째, 청년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여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은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45세라면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등에선 청년에 포함되지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민원도 종종 제기

○ **청년 연령 기준의 일원화에 관한 우려**

○ 첫째, 여러 법령과 조례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정된 청년 연령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연령 기준을 통일하면 기존에 시행 중인 제도와 개별 법령 등이 충돌할 우려

○ 둘째, 정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시행 중인 청년정책의 효과를 반감할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청년 연령 상한선을 확대했는데, 청년 연령 기준이 통일된다면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

4. 향후 개선 방향

(1) 다른 연령대와 연계한 청년 연령 기준 상한의 상향

○ 과거와 달리 청년세대의 고학력화와 늦어진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성인으로의 이행과정 완료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등 청년의 개념이 변하고 있어 청년 범위 확대가 필요한 상황

○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이 대체로 39세를 정책 연령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발의안과 같이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

○ 다만, 청년 연령 조정은 기타 청소년, 장년, 노인 등 전체 연령 세대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2) 국가 차원의 연령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재 운영 상황과 괴리되고 현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한 단서 규정은 살려 정책적 유연성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험응시연령 상한 설정, 법정형과 같이 권리부여, 의무부과 등의 정책 성격에 따라 **연령 상한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정책 대상과 연령 기준 간에 부정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방안이 필요**

○ 정책은 각각 그 나름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에 따라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특정 연령에 대한 정책을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음

○ 청년 연령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 합의를 하되, 그 범위에서 소외된 연령 세대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으로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사회정서역량(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요약 ≫

◇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도입된 사회·정서학습과 만 15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디지털 학습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

○ **사회·정서역량**이란 정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현진 외, 2020). 이러한 사회·정서역량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OECD는 2011년부터 '교육과 사회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연구(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OECD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었다(김현진 외, 2020).

○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사회·정서교육 비영리 단체인 CASEL(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 있다. CASEL은 사회·정서역량의 핵심 요소로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구성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OECD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소를 과제수행(끈기, 자기통제, 책임), 정서 조절(스트레스 저항력, 정서통제), 협력(협동, 신뢰, 공감), 개방성(호기심, 창의성), 타인관계(사회성)로 정의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PISA 2022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OECD가 정의하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소 중 호기심, 끈기, 정서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저항력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였다.

□ PISA 2022 사회·정서역량과 인지적 성취와의 관계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평가로, 학생들이 사회·경제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습득했는지를 측정한다. PISA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지속가능한 학습 역량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정서역량으로 호기심, 끈기, 정서 조절, 스트레스 저항력, 협력에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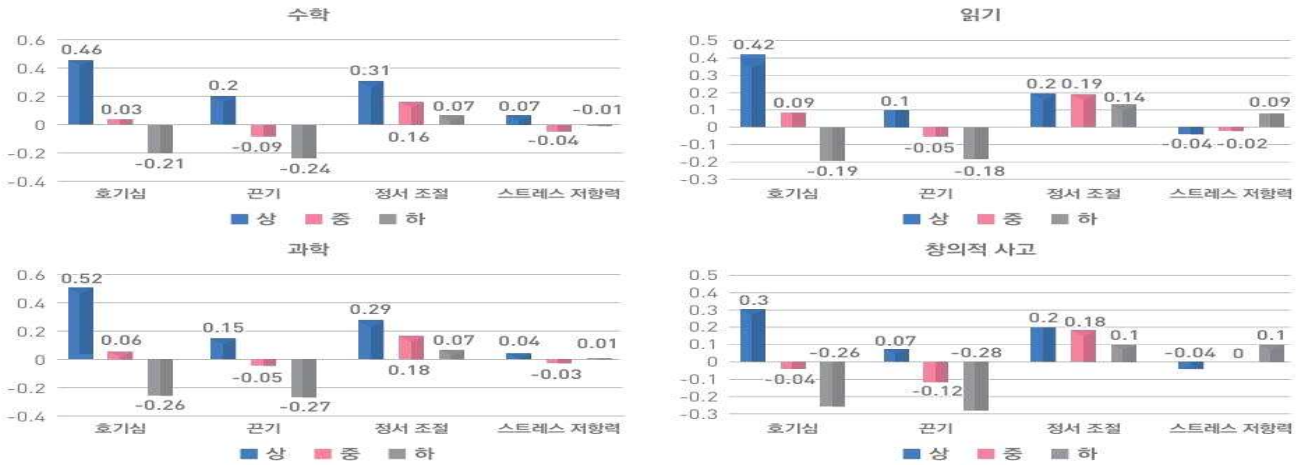
○ 다음 [그림 1]은 PISA 2022에서 조사된 사회·정서역량(호기심, 끈기, 정서 조절, 스트레스 저항력)에 대해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호기심, 끈기, 스트레스 저항력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정서 조절은 우리나라 평균이 0.18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OECD와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평균 비교

○ [그림 2]에서는 과목별 성취수준(상, 중, 하) 집단을 구분하여 각 사회·정서역량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성취수준 상 집단은 하 집단에 비해 '호기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과목과 창의적 사고 영역에서 상 집단의 사회·정서역량이 하 집단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와 유사하게, 끈기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반대로 **정서 조절은 수학과 과학을 제외한 과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스트레스 저항력**은 **읽기와 창의적 사고 영역에서 오히려 하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2] 과목 및 인지적 성취의 성취 수준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수준 비교

<표 1> 과목별 및 창의적 사고력 성취 수준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응답 평균 차이 검증

과목	사회·정서역량	과목 성취 수준 집단 평균 차이		
		상-중	상-하	중-하
수학	호기심	0.43*	0.66*	0.24*
	끈기	0.30*	0.44*	0.15*
	정서 조절	0.15*	0.24*	0.09*
	스트레스 저항력	0.11*	0.08*	-0.03*
읽기	호기심	0.33*	0.61*	0.28*
	끈기	0.15*	0.28*	0.14*
	정서 조절	0.01	0.06	0.05
	스트레스 저항력	-0.02	-0.14*	-0.12*
과학	호기심	0.45*	0.78*	0.32*
	끈기	0.20*	0.41*	0.22*
	정서 조절	0.11*	0.22*	0.11*
	스트레스 저항력	0.07*	0.03	-0.04
창의적 사고	호기심	0.34*	0.56*	0.22*
	끈기	0.19*	0.35*	0.16*
	정서 조절	0.02	0.10	0.08
	스트레스 저항력	-0.04	-0.15*	-0.11*

출처: 김성경 외(2024) p127, 130, 132, 135의 표 내용을 저자가 재구조화

* = p <.05

□ PISA 2022 사회 · 정서역량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

○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디지털 기반 학습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PISA 2022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시스템이 마비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가장 회복력이 높았던 교육 시스템들의 공통점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언급되었다(OECD, 2024, p.48). 실제로 OECD 국가 평균 기준 사회·정서역량 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기주도학습 자신감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끈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으로 호기심, 정서 조절, 스트레스 저항력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정서 조절이 OECD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수학성취도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 성공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호기심이 많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학생일수록 새로운 학습 내용을 기존의 지식과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OECD, 2024, p218),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하여 사회·정서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디지털 교육에서 학생의 사회 · 정서역량

○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2024.4.15.)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공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과 사회·정서역량을 성장하는 교육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디지털·AI 기반 학습**에서는 **교사나 다른 학생 간의 실시간·개별화된 상호작용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학습은 디지털 환경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나 **디지털 도구의**

과도한 활용이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김보경 외, 2023에서 재인용, p.681).

○ **PISA 2022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으로 학생의 45%가 디지털 기기가 가까이 없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OECDb, 2023, p.196). 또한, OECD 국가 및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경제권에서 디지털 기기 부재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스트레스 저항력과 정서 조절 능력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OECD, 2023b, p.197)

<표 3> 디지털 기기가 가까이 없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정도

국가	거의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절반 미만의 시간동안 그렇다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그렇다	거의 항상 또는 항상 그렇다	해당 없음
OECD 평균	49	19	17	9	7
우리나라	45	24	22	3	6

출처: OECD, 2023b, p196 그림 중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값만을 표로 저자가 재구성. OECD, PISA 2022 Database Annex B1, Chapter 5. StatLink: https://stat.link/6jbfey

○ 디지털·온라인 학습에서는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디지털 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정서적 불안을 어떻게 조절하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은 디지털 기반 학습 과정에서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디지털 기반 학습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사회·정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2024.4.15.)의 방안에서도 교사가 사회·정서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기반 학습과 수업은 학생의 사회·정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김보경 외, 2023).

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전력기금을 활용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행 방안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전기사업법」제48조는 정부로 하여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천분의 27로 인하될 예정이다.

○ 한편 「전기사업법」제49조3)는 전력 수급의 안정과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의 원활한 운영 도모,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전력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예산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나,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송전선로 주변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주변지역 주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체계]

구분		내용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의 보조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 지원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지원
	주민복지사업	주택 개량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 실시 교통수단 제공 도서관, 놀이방, 공부방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퇴화농작물·임산물의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 지원 등 영농규모화 지원 등
	육영사업	평생교육의 지원 농어촌학교의 운영 장학기금의 적립 기숙사의 제공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기타	주민 건강검진 실시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지원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송·변전설비 주변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등
재산적 보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해 설치 전 토지가격의 8~31% 수준 보상
주택매수 청구권		송전선로 주변 적용범위에 속한 주거용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설치 전 기준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택매수 청구권 부여

자료: 한국전력공사

나. 분석의견

○ 송·배전설비의 원활한 확충 필요성,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구조 악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전력기금을 활용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함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서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는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력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만 편성 되어 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지원 업무를 온전히 수행함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2025년의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규모는 1,50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 뒤인 2029년에는 약 1,85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정 투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소요 재원	1,501	1,635	1,808	1,856	1,859

자료: 한국전력공사

○ 이러한 가운데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선로는 57,681C-km까지 연장하고, 변전소는 1,228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1.64배, 1.38배 증가한 수치이다. 송·변전설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설비 확충을 위한 주변지역 보상 재원 또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구조 악화로 보상이 지연될 경우 송·변전소가 적기에 확충되지 않아 에너지 수요 기업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송전선로 및 변전소 확충 계획]

구분	2021	2029	2036
송전선로(C-km)	35,190	44,950	57,681
변전소(개)	892	1,107	1,228

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 2023.4.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전력기금 재원 사용 필요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5)에서 규정한 부도·폐업 또는 파산 및 그에 준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전력기금은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재원이므로 특정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 130억 2,000만원 중 2024년 8월 현재 시설부대비 100만원 외에는 전혀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송전선로 및 변전소 확충 계획]

구분	2021	2029	2036
송전선로(C-km)	35,190	44,950	57,681
변전소(개)	892	1,107	1,228

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 2023.4.

○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부채 규모는 120조 1,81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644.2%로 재무건전성이 꾸준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행령이 규정한 부도·폐업 및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위 법령이 규정한 요건인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자산(A+B)	1,131,035	1,155,785	1,310,237	1,388,383
부채(A)	597,721	685,319	1,089,630	1,201,812
자본(B)	533,314	470,466	220,607	186,571
부채비율(A/B)	112.1	145.7	493.9	644.2

자료: 한국전력공사

○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해당 지역주민에 한정되긴 하나, 이는 원활한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전기사용자의 전력 수요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기사업법」이 전력기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역시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만을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 따라서 정부는 현행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주변지역에 대한 적기 지원 및 보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송·변전설비 확충이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소요 재원을 전력기금 계획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 활용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체육단체 육성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간전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 복권기금 전출은 전년대비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8,300만원, 영화기금 전출은 전년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간전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100,000	100,000	0	0.0
복권기금 전출	10,283	14,689	15,583	894	6.1
영화기금 전출	-	30,000	60,000	30,0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체육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지속적으로 다른 기금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기금 여유재원을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015 ~ 2025년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기금과의 전입·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율(약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받고 있다.[4)]

○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기금 전출금이 없었으나 2016년 500억원에서 2025년도 계획안 1,756억원까지 10년간 3.5배 이상 급증하였다.

○ 이 중 복권기금 전입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복권기금 전출금 외에 타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해당 기금의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출되고 있다.

○ 2025년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년과 동일하게 1,000억원을 전출할 예정이며, 영화기금 전출금은 전년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5~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타 기금으로의 전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입	복권기금	52,316	53,383	62,881	68,282	75,423	77,901	88,565	93,814	91,450	91,954	92,044
전출	복권기금	-	-	-	-	7,817	1,904	4,739	12,202	10,283	14,689	15,583
	문예기금	-	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97,000	97,000	100,000	100,000	100,000
	관광기금	-	-	-	-	-	40,000	40,000	-	-	-	-
	영화기금	-	-	-	-	-	-	-	-	-	30,000	60,000
	계	-	50,000	50,000	50,000	107,817	141,904	141,739	109,202	110,283	144,689	175,583

주: 2015~2023년은 결산, 2024~2025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연도별 사업지출 및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지출[1] (A)	1,466,038	1,892,505	2,205,641	2,374,136	2,461,038	2,439,671	2,342,992
여유자금[2] (B)	629,574	1,305,509	1,021,980	1,439,885	1,810,847	2,364,869	2,616,202
B/A	0.4	0.7	0.5	0.6	0.7	1.0	1.1

주: 1) 사업지출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지출을 의미
2) 여유자금은 기말잔액 기준
1. 2018~2023년은 결산, 2024은 계획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기금의 연도별 수입(여유자금 회수 제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재산수입,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수입 등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수입	**1,442,863**	**2,543,874**	**1,891,583**	**2,772,809**	**2,863,986**	**2,884,417**	**2,978,420**	**2,828,563**
자체수입	**1,370,736**	**2,108,846**	**1,532,824**	**2,164,936**	**2,134,289**	**2,147,626**	**2,252,915**	**2,334,415**
법정부담금 (골프장부가금)	38,965	38,677	2,300	7	-	-	391	766
융자원금회수	11,945	9,732	19,313	31,394	43,969	79,828	96,860	136,225
재산수입[1]	43,417	37,503	26,909	29,884	40,324	72,283	54,750	55,920
기타경상이전수입	35,941	53,986	44,368	176,853	259,057	87,093	142,201	86,990
기타영업외잡수익	1,240,468	1,968,948	1,439,934	1,926,798	1,790,939	1,908,422	1,958,713	2,054,514
경륜전입금	31,869	21,474	17,480	-	1,698	188	10,839	7,746
경정전입금	5,509	2,932	3,486	-	717	150	5,410	3,546
투표권전입금	1,203,090	1,944,542	1,418,968	1,926,798	1,788,524	1,908,084	1,942,464	2,043,222
정부내부수입	**72,127**	**435,028**	**358,759**	**607,873**	**729,697**	**736,791**	**725,505**	**494,148**
복권기금전입금	68,282	75,423	77,901	88,565	93,814	91,450	91,954	92,044
공자기금	3,845	359,605	280,858	519,308	635,883	645,341	633,551	402,104

주: 1) 재산수입: 기타잡수입(69-691, 생활체육인프라, 올림픽홀, K-아트홀, 소마미술관 등 운영 수입, 스포츠용품시험수수료 등)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 기타민간재산수입(54-546)
1. 여유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
2. 2018~2023년은 결산, 2024~2025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기획재정부의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동 기금이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액 및 기간을 늘릴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실제로 동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5년에도 6,000억원의 공자기금 예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상당한 규모의 공자기금 예탁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공자기금 예탁	350,000	520,000	577,020	520,000	560,000	700,000	600,000	600,000
공자기금 회수	3,845	359,605	280,858	519,308	635,883	645,341	633,551	402,104
예탁원금 회수	-	350,000	270,000	507,020	620,000	620,000	600,000	360,000
예탁이자수입	3,845	9,605	10,858	12,288	15,883	25,341	33,551	42,104

주: 2018~2023년은 결산, 2024~2025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으나, 체육진흥투표권 전입금 등 체육과 관련된 자체 수입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타 분야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체육을 위해 쓰이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전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체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구할 것" 등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고려하여 복권기금 전입금 배분비율[5] 조정 등 수입 측면에서의 구조 개편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며, 우선적으로는 여유재원을 타 기금 사업이 아닌 체육진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편성된 체육 관련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21~2025년(안)) 동 기금의 신규·폐지·이관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2개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기금에 편성되었던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었다.

---

5)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약 3.63%(=100분의 35 ×100분의 10.371)를 배분받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최근 5년간(2021~2025년(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신규 · 폐지 · 이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안)	비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	-	695	695	5,654	2023년 신규
종목별 경기력 향상지원(R&D)	-	-	2,000	800	800	2023년 신규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5,000	10,133	12,910	18,370	-	폐지 (~24년 사업종료)
스포츠친화기업선정 ·지원	95	95	85	-	-	폐지 (~23년 사업종료)
스포츠창업 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개발(R&D)	1,701	-	-	-	-	폐지 (~21년 사업종료)
경륜·경정융자	-	65,000	-	-	-	폐지 (2022년 단년도사업)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4,291	3,007	-	-	-	폐지 (~22년 사업종료)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R&D)	3,950	4,000	5,000	-	-	폐지 (~23년 사업종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285	-	6,474	-	-	폐지 (23년 사업종료)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662	11,682	10,451	5,351	-	폐지 (정부안 미반영)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R&D)	7,733	13,672	11,922	2,140	-	폐지 (~24년 사업종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1)]	23,400	38,000	38,373	19,688	9,452	이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5,040	6,055	24,730	25,185	19,514	이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 1)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5163-300)' 사업의 내내역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1. 2021~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을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 사업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부족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체육사업의 경우 일반재정이 아닌 기금에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 미비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누리과정)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86억 1,800만원이 감액된 3조 1,02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37	3,210,631	3,102,013	△108,618	△3.4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유치원 유아학비는 전년대비 467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3,42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년대비 1,293억 4,800만원이 감액된 1조 3,46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안	증감	
					B-A	(B-A)/A
유치원	유아학비		1,295,668	1,342,371	46,703	3.6
		공립	161,206	166,508	5,302	3.3
		사립	1,134,460	1,175,862	41,402	3.6
	방과후과정비		384,008	362,839	△21,169	△5.5
		공립	84,218	78,454	△5,764	△6.8
		사립	299,789	284,384	△15,405	△5.1
어린이집	보육료		1,476,128	1,346,780	△129,348	△8.8
	처우개선비		54,827	50,023	△4,804	△8.8

자료: 교육부

○ 어린이집 보육료가 감소한 것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단가는 변화가 없지만, 3~5세 유치원 유아 수가 2024년에 비해 2025년 정부안에서

공립 3.3%, 사립 3.6%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유아 수는 △8.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전체 취원대상 인원 수가 감소(2024년 920천명→2025년 855천명, △7.0%)한 가운데 기관별 선호도 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유치원 유아 수는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유아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나. 분석의견

○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 과제별로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실현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 교육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등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제들은 연차별로 추진되며 2025년에도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구 분		'24.下	'25	'26	'27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이용시간/일수	(유) 1일 8h (어) 1일 12h	1일 기본8h+추가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세) 1:3	(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3~5세) 평균 1:12	과밀학급* 해소 * 예 (3세반) 1:13초과, (4세반)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3~5세) 평균 1:8 목표
	교사연수	(공립유) 연 60h			
		(사립유) 연 30h (어린이집) 3년간 40h	연 30h	연 45h	연 60h
	프로그램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	4세 무상	3세 무상

자료: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 6.

- 이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6월)에는 소요 예산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칭)교육·돌봄 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원을 통합하고 추가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관련 법안 통과 시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이 이관되고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관련 과제들은 교부금 등으로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 그러나 유보통합 및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정부에서 이를 모두 일선 교육청에 맡기기보다는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마련 등 저출산 완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의, 관련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5년까지 유효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무상교육·보육 실현은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우선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하며, 이미 무상인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합모델과 연계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5세 무상교육을 도입하며, 교육부는

2025년 소요예산을 총 2,68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원) 기준 학부모 부담금(15.9만원)을 지원하며,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7만원)를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5만원→7만원)한다.

[5세 무상교육 소요예산 추정]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유아교육비 / 표준보육비용	'23년	표준유아교육비 55.7만원 - 지원액 39.8만원 = 15.9만원	표준보육비용 52.2만원 - 지원액 53.5만원 = 표준보육비용 초과 지원
	'24년	교부금 유아학비 5만원 추가지원	교부금 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25년	추가지원액 11만원	보육료 추가 지원 없음 (현재 학부모 부담 없음)
		소요액 1,737억원	
		무상비율 66.9% ('23년 19.6%)	
필요경비			학부모부담 전국평균 약 7만원* * 기타필요경비 4만원, 특별활동비 2.9만원 ⇩
	'25년		추가지원액 7만원 소요액 804억원

자료: 교육부

[5세 무상교육 소요예산 총 2,681억원 산출내역]

1) **유아교육비** : (사립유)131,558명 × 11만원* × 12개월 = 173,657백만원
   * 학부모 부담금 15.9만원 중 5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2)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58,401명 × 2만원 × 12개월 = 14,016백만원
3) **보육료** : (어린이집)95,735명 × 7만원 × 12개월 = 80,417백만원

자료: 교육부

- 2025년 정부예산안에 무상교육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과 2024.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간 재원 부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두 차례(2023년 6월 1일, 12월 4일)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의무지출은 예산에서 과소하게 편성되더라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의무지출이 예산안에 과소하게 편성되면 관리재정수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25년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각각 5.2%, 0.8% 증액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를 △2.9%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의무지출 소요액이 예산안 편성을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 따라서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 과제별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실현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정수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회